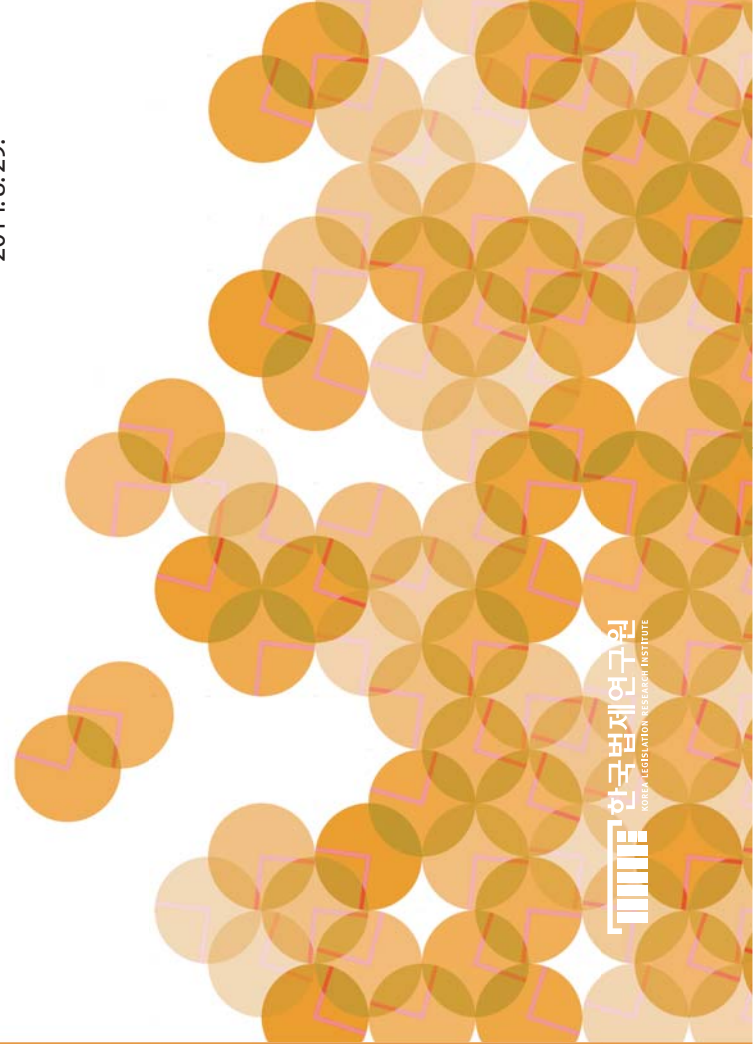


# 한 · 중 출입국관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2014. 8. 29.



# 한·중 출입국관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지역법제 자료 14-16-⑭

# 한·중 출입국관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2014. 8. 29.

## 워크숍 일정

1. 일 시 : 2014년 8월 29일(금) / 13:00~18:00
2. 장 소 : 세종로 출입국관리사무소 3층 회의실
3. 목 적
  - 한·중 출입국관리제도에 관한 각계 실무 전문가의 검토
  - 출입국관리제도 관련 정책 연구를 통한 실무적 방향성 설정
  - 실무적 요청이 반영된 연구를 통한 정책 제언과 시사점 도출
4.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순 서	참가자
13:00~	한·중 외국인 등록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발 제	윤성혜 (원광대 한중법률연구소 연구교수)
13:30~	한·중 양국의 국적법 관계	발 제	이기흠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서기관, 변호사)
14:00~	Break Time		
14:10~	대중국인 비자발급 간소화에 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	발 제	장은정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14:40~	중국의 영주제도 현황과 시사점	발 제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워크숍 일정

시 간	내 용	순 서	참가자
15:10~	Break Time		
15:30~	종합토론		구본준(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사무관) 김명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우재화(국제법률사무소선린 중국 변호사) 윤상운(건국대학교 국제학부 조교수) 이재형(국가인권위원회 침해조사과 사무관) 정기선(IOM이민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차규근(법무법인공존 변호사) 이상 가나다 순.

# 목 차

## ■ 발제문

한·중 외국인 등록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윤성혜) .....	11
I. 시작하며 .....	11
II. 중국의 외국인 등록제도 .....	12
1. 외국인 출입국 현황 및 외국인 등록에 관한 법률 .....	12
2. 외국인의 체류 및 거류 .....	13
3. 외국인의 영구 거류 .....	21
III. 한국의 외국인 등록제도 .....	24
1. 외국인 출입국 현황 및 외국인 등록에 관한 법률 .....	24
2. 외국인등록 제도 .....	28
3. 거소신고 제도 .....	32
IV. 맺으며: 양국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 .....	34
한·중 양국의 국적법 관계 (이기흠) .....	37
1. 서 론 .....	37
2.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혈통주의) .....	39
3. 외국인의 귀화 .....	41
4. 국적회복 .....	42
5. 복수국적 .....	45
6. 결 론 .....	48
(붙임) 중화인민공화국국적법(中華人民共和國國籍法) .....	49

대중국인 비자발급 간소화에 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 (장은정) ...	51
I. 서론 .....	51
II. 한·중 양국의 비자관련 출입국 관리법률 .....	53
1. 중국의 신출입국관리법 .....	53
2. 중국의 외국인출입국관리조례 .....	56
3.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	58
4. 양국의 비자제도 및 법률 비교 .....	63
III. 한·중 양국의 교류현황 및 비자발급 간소화에 관한 문제점 ...	66
1. 한·중 양국의 교류현황 .....	67
2. 방한 중국인 대상 비자제도 운영 현황 .....	68
3. 방한 중국인 비자발급 간소화에 관한 문제점 .....	71
IV. 대중국인 비자완화에 따른 대응 및 협력 방안 .....	73
1. 비자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 .....	73
2. 다른나라 비자제도 개선사례 .....	76
3. 대중국인 비자완화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및 협력방안 .....	77
V. 결론 .....	80
참고 문헌 .....	82
중국의 영주제도 현황과 시사점(최윤철) .....	84
I. 들어가는 말 .....	84
II. 중국의 영주제도 .....	84
1. 의의 .....	84
2. 영주권 취득 절차 및 주요 내용 .....	86
3. 영주권 취득 현황 .....	90

Ⅲ. 시사점 .....	90
Ⅳ. 나가는 말 .....	94
참 고 문 헌 .....	96
<b>■ 토론문 .....</b>	<b>97</b>
이재형 .....	99
차규근 .....	105



**발제문**

## 한·중 외국인 등록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윤 성 혜

(원광대 한중법률연구소 연구교수)

### I. 시작하며

어떤 국가가 자국의 영토로 진입하는 외부의 물자나 외국인을 법률로써 통제하는 것은 고금을 막론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존재해 왔다. 이처럼 물자나 외국인의 자국으로의 진입을 통제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안전이다. 한편 국가안전을 이유로 자국으로 진입하는 물자나 외국인을 무조건 막는 것은 현대사회의 개혁개방에 역행하는 것이며, 반면 통제를 너무 유연하게 하여도 자국민과 사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전통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인적 물적 교류는 양국의 지리적 사정으로 인하여 국가의 성립과 같이 한다. 또한 근대에 들어, 중국은 이른바 ‘세계의 거대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각국의 물자와 인력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도 1992년 중국과 수교를 맺은 이후, 사회 모든 영역에서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양국간의 교류협력이 더욱 심화되고 양국의 인적 교류가 활발해 지고 있다. 한국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의 체류지, 체류 목적, 체류 기간, 근무처 등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체류 외국인을 관리하기 위해서 외국인 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은 ‘외국인등록’이라는 용어를 따로 쓰진 않지만 외국인의 체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숙등기와 거류신청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한 주숙등기와

거류신청 제도는 중국의 외국인 관리감독 강화 정책에 따라 더욱 엄격해 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양국의 외국인 등록제도 현황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양국의 외국인 등록법제에 대한 차이점과 특징을 살펴보고, 장래 중국과 한국의 인적 교류에 있어 양국의 외국인 등록에 관한 주의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 II. 중국의 외국인 등록제도

### 1. 외국인 출입국 현황 및 외국인 등록에 관한 법률

#### 가. 외국인 등록에 관한 법률

중국은 외국인출입과 외국인등록에 관해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이하 ‘출입경관리법’라 함)과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출입경관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出入境管理条例)》(이하 ‘출입경관리조례’라 함)에서 규정하고 있다. 출입경관리법은 출입경관리르 규범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및 안전과 사회질서를 도모하며, 대외교류와 대외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13년 7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본 법의 제정으로 종전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출입경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과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출입경관리법(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出境入境管理法)》을 하나로 통합하였다.

출입경관리법에서는 외국인의 체류기간에 따라 체류와 거류를 구분하고, 불법체류 및 불법취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외국인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었다. 본 법에서의 ‘외국인’은 중국 국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출경(出境)’은 중국에서 타국가 혹은 지역으로 가는 경우, 중국 내부에서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로 가는

경우, 중국 대륙에서 대만지역으로 가는 경우를 말한다. ‘입경(入境)’은 타 국가, 지역,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대만에서 중국 내부로 진입하는 것을 말한다.

#### 나. 외국인 출입국 현황

중국 공안국 출입경 관리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출입국 심사를 받은 인원은 총 4.54억 명으로 2012년에 비해 5.43% 증가하였다. 그 중 외국인은 5250.91만 명으로 1985년 대비 각각 약 9배, 15배 증가하였다.<sup>1)</sup> 2013년 외국인의 중국 방문 목적으로 관광(5250.9만 명)이 38.50%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단순 방문(438.72만 명), 교통운수도구 서비스 직원(319.53만 명), 회의(180.68만 명), 취업(108.67만 명), 유학(21.58만 명) 등 순이다. 중국을 출입하는 외국인 중 한국인이 가장 많았고 그 뒤로 일본, 러시아, 미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순이다. 이들 외국인들은 주로 상하이 푸둥(浦东) 공항(17.95%), 베이징 쇼우두(首都) 공항(16.01%), 그리고 광조우 바이윈(白云) 공항(8.51%)을 통해 입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외국인의 체류 및 거류

### 가. 체류과 거류의 개념 구분

중국은 출입경관리법에 따라 ‘체류’와 ‘거류’의 개념을 구분하고 있다. 개념에 따라 출입경 사유와 체류 기간이 달라진다. 중국 경내에 거주하면서 특정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체류 또는 거류의 형태로 관리된다. 출입경 사유에 따른 체류와 거류의 구분은 발급받은 사증(비자)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다. 예를 들면, J 사증의 경우 장기사증

1) 公安部出入境管理局, “2013年出入境人员和交通运输工具数量同比稳步增长”, 2014.01.09. <<http://www.mps.gov.cn/n16/n84147/n84196/3971894.html>> (방문일자: 2014.08.13.)

(J1)과 단기사증(J2)로 나뉘며, J1은 중국주재 해외 언론기관에 소속되어 중국에 상주하려는 외국 기자에게 발급되고, J2는 단기간 방문하여 보도 취대를 하려는 외국기자에게 발급된다.<sup>2)</sup> X1 사증은 중국내 교수·연수기관에서 장기간 학업에 종사하려는 자에게 발급하며, X2 사증은 중국내 교수·연수기관에서 단기간 학업에 종사하려는 자에게 발급한다.<sup>3)</sup> 본 개념은 기간을 기준으로 나뉘기도 하는데 출입경관리법에 따라 180일이 양자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외국인이 소지하는 사증에 기재된 체류 기한은 180일을 넘을 수 없다.<sup>4)</sup> 180일이라는 기한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긴 기간으로 보통 사증의 체류기한이 90일을 넘는 나라는 많지 않다. 중국이 180일 체류 기한을 채택한 것은 외국국적을 가진 중국인이 귀국하여 친인척을 방문하거나, 해외 고위층 인재 등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국을 방문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서 세계의 인재를 중국으로 유인하여 사회경제발전을 추진하고자 한 것이다.

#### 나. 외국인의 주숙(住宿)등기

외국인이 중국의 숙박시설 및 기타 장소에 거주 또는 숙박할 경우 주숙(住宿)등기를 해야 한다. 이는 외국인의 체류 및 거류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써 《외국인 출입경관리법(外国人处境入境管理法)》(1985)의 원칙성 규정이다. 이후 1987년 국무원이 비준하고,公安국이 발표한 《여관업치안관리방법(旅馆业治安管理办法)》에도 외국인 여행객에 대해서 주숙등기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2007년公安부는 《공안파출소 외국인 주숙등기 관리방법(시행)(公安派出所外国人住宿

2)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 출입경 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出入境管理条例)》 제 6조의(5).

3) 위 조례 제 6조의 (11).

4) 《중화인민공화국 출입경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제 29조.

登记管理办法 (试行) )》을 제정하고 중국 경내에서 주택구매 및 임대 거주 그리고 관련 기관 및 타인의 집에 숙박하는 등 숙박시설이 아닌 곳에서 숙박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주숙등기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출입경관리법 제 39조에서도 숙박시설의 숙박과 숙박시설 외의 숙박에 대해서 분리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이 중국 경내의 숙박시설에 투숙할 경우, 숙박시설은 여관업치안관리 관련 규정에 따라 주숙등기를 해야 한다.<sup>5)</sup> 그리고 외국인 주숙등기 정보를 주소지 공안 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외국인이 도시나 읍에 있는 중국 주민의 집, 외국인 집 또는 외국 기관 등 숙박시설 이외의 기타 장소에 거주 혹은 숙박 할 경우, 투숙 후 24시간 내에 본인 혹은 유숙인, 유숙기관이 소재지의 공안 기관에 등기 수속을 해야 한다.<sup>6)</sup>

만약 숙박업체가 규정에 따라 외국인 주숙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는 치안관리처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소재지 공안기관에 외국인 주숙등기 정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경고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1천 위안 이상 5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외국인 숙박시설 이외에 거주 또는 숙박하면서 주숙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경고하고 2천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5) 《여관업치안관리방법》 제 6조: 여관은 여행객 투숙 시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 등기 시에는 여행객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규정 항목에 따라 사실대로 등기한다. 외국인 여행객이 투숙할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소재지 공안기관에 주숙 등기표를 보고해야 한다.

6) 앞의 법률 제 39조 2항.

[그림 1] 중국 주숙등기증

No. G [Barcode] 临时住宿登记表 表(三)  
REGISTRATION FORM OF TEMPORARY RESIDENCE

英文姓 Surname	英文名 First Name	性 别 Sex
中文姓名 Name in Chinese	国 籍 Nationality	出生日期 Date of Birth
证件类型 Type of Certificate	证件号码 Certificate No.	签证类别 Type of Visa
签证有效期 Valid Visa	抵达时间 Date of Arrival	离开时间 Date of Departure
住房种类 Housing Status	住 址 Address	

派出所联系电话:

离京时请将此表交回派出所

#### 다. 외국인 거류증

외국인은 사증을 받아 입경한 후 거류증 수속을 해야 한다.<sup>7)</sup> 외국인 거류증은 관련기관이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합법적으로 중국에 거류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상의 문건이다. 2005년 이전에는 외국인 출입경관리법의 규정에 따라公安기관의 출입국관리기관이 외국인에게 거류증과 임시 거류증을 발급하고, 여권에서 분리된 형태로 소지하였다. 2005년부터 종이로 된 거류허가증을 여권에 붙여서 사용하게 되었다. 2010년 6월 1일부터 외국인 거류증을 발급하는 대상을 확대하였다.

7) 앞의 법률 제 30조.



현재 거류증은 1)취업, 2)학업, 3)기자, 4)친지 방문, 5)사적 용무 등으로 분류된다.<sup>8)</sup> 친지 방문 거류증은 친지 방문을 원하는 중국 공민, 영구 거주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의 가족과 입양 등의 이유로 중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자에게 발급한다.<sup>9)</sup> 그리고 사적용무 거류증은 중국내에 취업, 학업 등의 이유로 중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장기간 방문하는 외국인의 배우자, 부모, 18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 및 기타 사적인 용무로 중국내에 거주해야 하는 자에게 발급한다.<sup>10)</sup>

[그림 2] 외국인 거류증




---

8) 앞의 조례 제 15조.  
 9) 앞의 조례 제 15조의 (4).  
 10) 앞의 조례 제 15조의 (5).



## 라. 외국인 거류증 신청, 연장 및 변경

외국인 거류증의 신청은 입경 후 30일 이내에 거류지 현급(县级)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관에서 신청한다. 신청 시 본인의 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서 및 신청사유에 따른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사유 관련 자료는 6개월 이상 유학을 할 경우 외국유학생 사증 신청서, 입학통지서, 그리고 외국인 신체검사증 등의 자료를 말한다. 또한 중국에 일을 하러 오는 경우는 취업허가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거류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규정에 따라 지문 등의 생체인식정보를 남겨야 한다. 거류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중국 경내에 6개월 이상 머무르게 된다. 이들은 중국 정부의 집중 관리 대상이 되는데 지문 등의 생체인식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 신분의 식별이 용이하고, 출입국 관리 및 국가 안전을 보장하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외국인 거류증 접수기관은 15일 이내에 신청이 접수된 거류증의 심사결정을 완료하여야 하며, 거류사유에 상응하는 종류와 기한의 외국인 거류증을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외국인 거류증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 거류증이 발급되는 것은 아니다. 1) 외국인 소지한 비자의 종류가 거류증 수속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2) 신청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3) 규정에 따른 관련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중국의 관련 법률 및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중국 거류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5) 사증 기관이 외국인 거류증만 발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타 경우는 외국인 거류증을 발급받지 못 한다.<sup>11)</sup>

외국인 거류증의 유효기간은 취업 거류증은 최단 90일에서 최장 5년이고, 비취업 거류증은 최단 180일, 최장 5년이다.<sup>12)</sup> 중국에 거류

---

11) 앞의 법률 제 31조.

12) 앞의 법률 제 30조.

중인 외국인은 거류증 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거류증 연장 신청은 유효 기간 만료 30일 전에 거류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 관리 기관에 신청해야 한다.<sup>13)</sup> 만약 거류증에 기재된 1)소지자 이름, 2)성별, 3)생년월일, 4)거류 사유, 5)거류 기한, 6)발급 날짜 및 장소, 7)여권 혹은 기타 국제여행증번호 등의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변경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한편, 일시 체류 중인 외국인은 국가 규정에 부합할 경우, 체류를 거류로 변경할 수 있다.<sup>14)</sup>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한 국가에 입국한 후에 경내에서 신분을 변경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경내에서 외국인의 신분 변경이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신분의 변경을 위해서는 반드시 출경 후 다시 변경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경내에서 외국인의 신분 변경이 허가되는 경우로 반드시 출경을 할 필요가 없다. 중국의 경우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외국인의 경우 경내에서 체류를 거류로 변경할 수 있다.

일정한 조건에 부합한다는 것은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전문 인재, 투자자 혹은 인도주의적 사유 등으로 일시 체류를 거류로 바꿀 필요가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이는 전문 인력 및 투자자를 위인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주요정책으로 이들 외국인에게 입국과 거류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함이다.<sup>15)</sup> 다만, 체류를 거류를 전환하는 일은 중대 사안인 만큼 현급(县级)이상이 아닌 시급(市级) 이상의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관에서 비준한다.

---

13) 앞의 법률 제 32조.

14) 앞의 법률 제 31조 2항.

15) 《国务院办公厅转发公安部外交部等部门关于为外籍高层次人才和投资者提供入境及居留更便利的通知》(国办发[2002]32号)(이하 통지). 본 《통지》에서는 경내에서 체류를 거류로 변경할 수 있는 6형태의 외국인에 대해 나열하고 있다.

#### 마. 외국인의 활동 범위와 취업

외국인은 중국 내에 체류, 거류 시 그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일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중국 경내에 체류 및 거류 할 때에는 중국의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체류 및 거류의 사유에 따라 일을 하거나, 학업, 가족 방문, 여행, 상무 등의 활동을 한다. 사유와 다르게 행동할 경우 국가의 안전과 사회 공익 및 출입경 관리 질서를 위해서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한다. 이 경우公安부는 해당 외국인에게 기한 내 출국을 명할 수 있다. 외국인이 본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황이 심각하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강제추방 할 수 있는데 강제 추방된 외국인은 출국된 날부터 10년 이내 입경이 불허된다.<sup>16)</sup>

한편, 외국인은 체류 및 거류 기한 만료 전에 출국해야 한다. 출국하지 못 하면 불법 체류가 되므로 법에 따라 법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외국인이 불법 거류한 경우 우선 경고하고, 상황이 심각한 경우 벌금 총액이 1만 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루에 5백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게 된다.<sup>17)</sup>

외국인 중국 경내에서 취업할 경우 취업 허가증과 외국인 취업 거류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중국의 사증은 외교사증, 예우사증, 공무사증, 일반사증으로 구분된다.<sup>18)</sup> 따라서 중국 경내에서 취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우선 취업 허가를 받은 후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대사관에 가서 취업 사증을 신청해야 한다. 취업 사증을 가지고 입경한 후에는 30일 이내에 관련 기관에 취업 거류증을 신청한다. 외국인이 취업 사증과 취업 거류증 없이 취업한 경우 불법이며,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5일

---

16) 앞의 법률 제 81조.

17) 앞의 법률 제78조.

18) 앞의 법률 제16조.

이하의 구류에 처하며, 또한 5천 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sup>19)</sup>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에 벌금 총액이 10만 위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 1인당 5천 위안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 3. 외국인의 영구 거류

#### 가. 영구 거류 제도

중국은 2004년 《외국인의 중국 영구 거류 심사비준 관리 방법(外国人在中国永久居留审批管理办法)》<sup>20)</sup>(이하 방법)을 제정하고 영구거류 제도를 실시하였다. 영구거류 자격은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이 중국에 거류할 경우 거류 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 일종의 자격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녹색카드”인 샴이다. 중국 법률을 준수하고, 신체 건강하며, 범죄기록이 없는 등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중국에 거류하는 어떤 외국인도 영구거류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

본 제도의 시행은 개혁개방이후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중국이 지속적인 사회경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외국의 뛰어난 인재 유입에 대한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 거류하는 외국인 또한 영구 거류에 대한 열망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외국의 뛰어난 인재를 초빙하고 투자자를 유인하여 중국의 사회경제발전과 대외교류 협력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 나. 영구 거류 자격의 취득 조건과 절차

중국은 세계 최대 인구 보유국으로 외국인에 대한 영구 거류 자격 부여에 매우 엄격하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영구 거류 제도의 목적이

19) 앞의 법률 제80조.

20) 2003년 12월 13일 국무원 비준, 2004년 8월 15일 공안부, 외교부 제74호령 공포.

외국의 인재를 영입하고 외국의 자본과 선진 기술을 유입하는데 있으므로 영구 거류 자격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중국의 사회경제발전을 위해 명확한 공헌을 한 자이어야 한다.<sup>21)</sup> 영구 거류 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은 《방법》 제 6조, 7조, 8조에 언급되어 있다.<sup>22)</sup> 영구 거류 자격은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며, 공안부에서 심사 비준한다. 또한 신청 및 심사 비준의 구체적인 절차는 《방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 다. 영구 거류 자격의 권리

영구 거류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우선 영구 거류증이 발급된다. 영구 거류증은 중국 공민의 신분증과 같이 중국 경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증이 된다. 다음으로 거류와 사업에 있어 내국민대우를 받게된다. 영구 거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은 중국 공민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취업, 취학, 주택임대, 출입경, 각종 사회보험 및 복지 등 방면에서는 중국 공민과 똑같은 권리를 향유 할 수 있다. 동시에 병역 복무를 제외한 납세 등의 의무를 중국 공민과 마찬가지로 지게

---

21) 앞의 법률 제47조.

22) 《방법》 제 6조에 따른 영구 거류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다음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여야 한다.

- (1) 대 중국 직접 투자자 중 3년 연속 안정된 투자 현황과 납세실적이 양호한 자
- (2) 중국 내 총경리, 부공장장 등의 직무 이상을 맡은 자 혹은 부교수, 부연구원 등 부고급직위 이상의 직무 담당자 및 동등 대우를 받는 자로 연속 만 4년 이상 보직을 유지하였으며, 이미 연속 4년 간 중국 내 거류 기간이 3년이 넘는 납세실적이 양호한자
- (3) 중국에 큰 공헌을 하였거나 국가가 필요로 하는 자
- (4) 상기 관련자의 배우자 및 만 18세 미만의 미혼자녀
- (5) 중국인 혹은 중국내 영구 거류 자격을 보유한 외국인의 배우자로 혼인 관계가 연속 만 5년 이 유지되었고 중국내 거류기간이 이미 만 5년이 지났으며, 연간 중국내 거류 기간이 9개월 이상으로 안정적인 생활보장과 주소를 유지한 자
- (6) 외국에 직계 친속이 없으며 중국내 직계 친속이 존재하는 자로 만 60세 이상, 중국내 거주 기간이 연속 만 5년 이상으로 연내 중국내 거류 기간이 9개월 이상으로 안정적인 생활 보장과 주소를 유지한 자

된다. 특히 거류 및 사업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영구 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 중국에 회사를 등록 할 경우 중국인 합작 파트너가 필요 없고, 법인세 또한 감면된다. 중국에서의 거류 기한 제한도 받지 않으며 취업의 자유도 누리게 된다. 취업을 할 경우 취업 비자 및 취업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다.

마지막으로 출입경 시 내국민대우를 받는다. 영주 거류 자격을 받은 외국인은 유효한 여권과 외국인 영구 거류증만 가지고도 출입이 가능하며 별도의 사증을 발급 받을 필요가 없다. 단 홍콩, 마카오, 타이완 지역을 왕래할 경우 중국 공민과 같이 통행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중국 영구 거류 자격은 다음의 경우 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sup>23)</sup> (1) 중국의 국가 안전과 이익에 손해를 끼친 경우, (2) 강제 출국된 경우, (3) 허위 서류 등으로 영구 거류 자격을 취득한 경우, (4) 중국 국경 내 거류 기한이 영구 거류 자격의 규정 기한에 미달한 경우, (5) 중국 국경내 영구 거류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상황에 해당되는 경우.

[그림 3] 중국의 외국인 영구거류증<sup>24)</sup>



23) 앞의 법률 제 49조.

24) 公安部出入境管理局. <<http://www.mps.gov.cn/n16/n84147/n84211/n84379/1295420.html>> (방문일자: 2014.08.19.)





국민등록을 하여야 한다.<sup>27)</sup> 만약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 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sup>28)</sup>

외국인의 체류 자격은 이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 범위에 따라 다음으로 구분된다.<sup>29)</sup> 외교(A-1), 공무(A-2), 협정(A-3), 사증면제(B-1), 관광 및 통과(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동반(F-3),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기타(G-1),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체류 자격별 체류 기간의 상한은 관리법 제 10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다.

[표 1] 자격별 체류 상한 및 외국인등록

체류자격별	1회 체류기한 상한, 외국인등록 필요유무
외교, 공무, 협정(A-1, A-2, A-3)	외국인등록 면제 대상이나 본인이 원할 경우 외국인 등록증 발급*(기타 등록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각종 의무, 등록사항변경 신고, 체류지 변경 신고 등도 적용 면제)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일시취재(C-1), 단기취업	외국인 등록 면제

27) 위의 관리법 제 31조.

28) 위의 관리법 제 25조.

29)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 12조 별표 1.



체류자격별	1회 체류기한 상한, 외국인등록 필요유무
단기방문C-3	단기상용(C-3-4) 소지자로 91이상 체류하고자 하는 칠레 국민 단기사용자는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활동 등 상용 활동자 및 사증 없이 입국하는 APEC카드 소지자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취재(D-5),종교(D-6), 주재(D-7), 벤처투자(D-8-2) 및 기술창업(D-8-4), 무역경영(D-9), 회화지도(E-2), 예술홍행(E-6), 방문동거(F-1)	2년, 외국인등록 필요
기술연수(D-3), 선원취업(E-10), 기타(G-1)	1년
법인에 투자(D-8-1) 및 개인기업에 투자(D-8-3),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5년
구직(D-10)	6개월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거주(F-2), 결혼이민(F-6)	3년
동반(F-3)	동반하는 본인에 정하여진 기간
영주(F-5)	상한선 없음
관광취업(H-1)	협정상의 체류기간
*인터넷 쇼핑 등 온라인 이용 시 본인 인증 곤란으로 국내생활 불편 해소 목적	

## 나. 체류 외국인의 활동 범위와 취업

외국인은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 한국에 체류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sup>30)</sup> 외국인이 체류하면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을 소지하여야 하며, 지정된 근무 장소에서만 근무하여야 한다. 근무 장소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또는 일정 기간 내에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은 다음과 같다. 단기취업,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홍행, 특정활동, 비전문취업, 선원취업, 거주, 재외동포, 영주, 결혼이민, 관광취업.<sup>31)</sup>

## 다. 한국 내 체류외국인 개황

통계에 따르면<sup>32)</sup> 2013년 말 기준 국내 체류외국인은 1,576,034명으로 2012년 대비 9.1%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주로 단기체류 관광객의 증가, 중국 동포에 대한 재외동포(F-4) 자격 대상 확대 및 국적취득 요건을 갖춘 외국국적동포의 영주(F-5)자격 신청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여 진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778,113명으로 전체 49.4%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미국(134,711명), 베트남(120,069명), 일본(56,081명) 순이다. 이중 중국은 방문취업제 및 관광, 일본은 관광객, 베트남과 필리핀은 단기방문 및 고용허가제, 타이는 사증면제 및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sup>33)</sup>

국내 체류외국인을 체류목적별로 살펴보면, 방문취업자 등 취업자격

30) 앞의 관리법 제 1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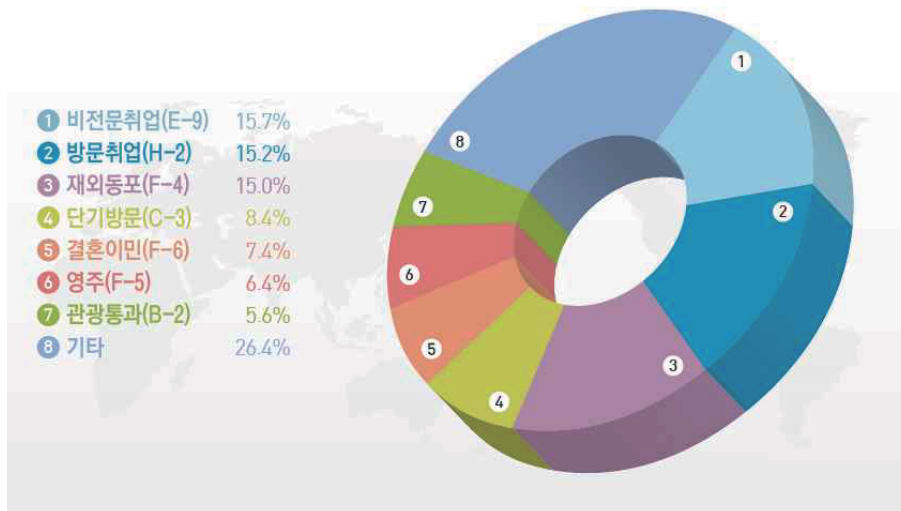
31) 앞의 시행령 제 23조의 1.

3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3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연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2014, 278면 참고.

33) 법무부, 위의 책, 285면.

체류외국인은 549,20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재외동포(F-4)가 235,953명, 결혼이민자(F-2, F-2-1, F-5-2)가 150,865명, 영주(F-5)가 100,171명으로 나타났다.<sup>34)</sup>

[그림 4] 체류자격별 구성 현황<sup>35)</sup>



## 2. 외국인등록 제도

### 가. 외국인의 등록

한국은 국내에 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국내에 90일을 초과해서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체류지 관할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이 면제된다. (1)외교, 공무, 협정 수행자

34) 법무부, 위의 책, 279면.

35) 법무부, 앞의 책, 282면.

및 그 가족(A-1, A-2, A-3), (2)외교, 산업, 국방상 중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의 가족과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외국인등록을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 (3)6월 미만 체류하려는 캐나다 국가 국민 중 문화예술(D-1),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에 해당되는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 (4)17세 미만 등록 외국인<sup>36)</sup>. 만약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sup>37)</sup>

외국인등록을 하는 사람은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지정하는 정보화기기를 통하여 양쪽 손가락의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sup>38)</sup>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외국인에게는 사무소장이나 출장소장이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sup>39)</sup>

#### 나. 외국인등록증 발급 및 반납

외국인 등록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이 할 수 있다.<sup>40)</sup> 다만 외국인등록 신청자가 17세 미만인 경우 본인 이외에도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및 형제자매, 신원보증인이나 그 밖의 동거인이 신청할 수 있다.<sup>41)</sup> 외국인 등록을 위해서는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외국인등록신청서 및 체류 자격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외국인등록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그 외국인에게 개인별 고유한 등록번호, 즉 외국인등록번호 부여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해 준다.<sup>42)</sup>

36) 이 경우 17세가 되면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앞의 관리법 제 33조의 2.

37) 앞의 관리법 제 32조 및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 4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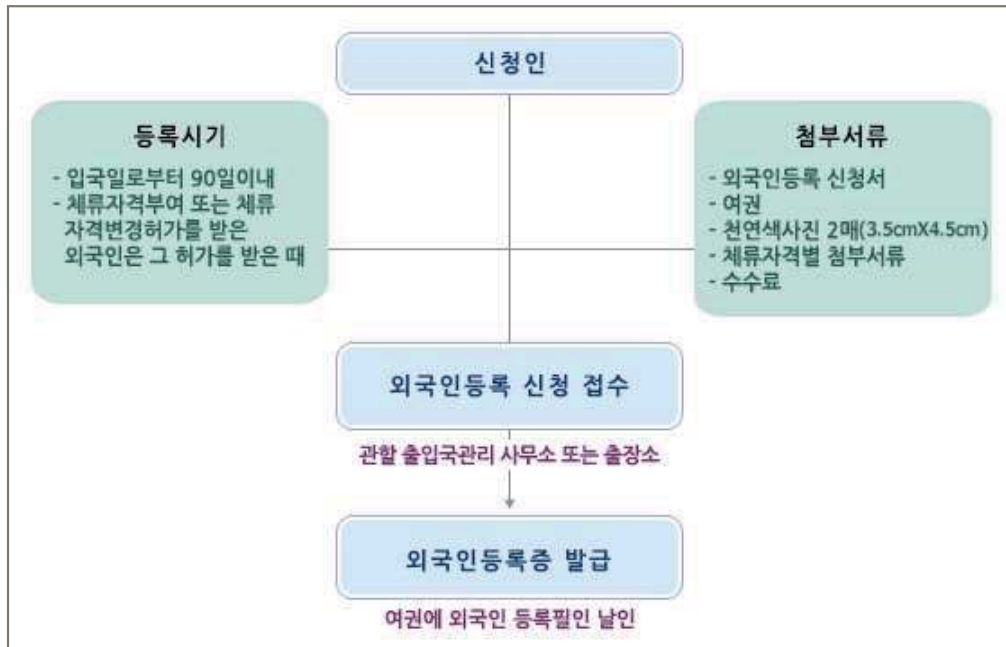
38) 앞의 관리법 제 38조.

39) 앞의 관리법 제 38조의 2.

40) 앞의 관리법 제 31조 및 위의 시행규칙 제 34조,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제 2조 및 별표.

41) 앞의 관리법 제 79조의 5 및 앞의 시행령 제 89조.

[그림 5] 외국인 등록 절차<sup>43)</sup>



등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발급과 함께 이를 휴대 및 제시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sup>44)</sup> 따라서 외국인은 대한민국에 체류 시 항상 여권, 외국인입국허가서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지니고 다녀야한다(단, 만 17세 미만의 외국인 제외).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이 있는 공무원(시군구의 등록 담당자 포함)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국인등록증 등의 제시를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up>45)</sup>

등록외국인이 완전히 대한민국을 출국하고자 할 때에는 완전 출국 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다. 등록외국인이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고

42) 앞의 관리법 제 31조의 4, 제 33조의 1 및 앞의 시행령 제 41조.

43)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http://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categoryId=1&parentId=139&catSeq=&showMenuId=18](http://www.hikorea.go.kr/pt/InfoDetailR_kr.pt?categoryId=1&parentId=139&catSeq=&showMenuId=18)> (방문날짜: 2014.08.19)

44) 앞의 관리법 제 27조.

45) 앞의 관리법 제 98조의 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주민등록을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다. 반납 시 대한민국 국적 취득 증명 서류, 외국국적 상실 증명서류를 첨부한다. 등록외국인이 사망한 때에는 사망을 안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 기타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을 반납한다. 만약 기간 내 반납하지 않으면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로 처분을 받게 된다.<sup>46)</sup>

[그림 6] 한국의 외국인 등록증



46) 앞의 관리법 제 100조의 2, 앞의 시행령 제 102조 및 별표 2.

#### 다. 외국인 등록 사항 변경신고

등록외국인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해야 한다.<sup>47)</sup> (1)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2)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3)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부터 무역경영(D-9) 자격 외국인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가 변경(명칭변경 포함)된 경우, (4)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자격 외국인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준비하여 신고한다. 만약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1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sup>48)</sup>

### 3. 거소신고 제도

국내 거소신고 제도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법률」(이하 재외동포법)에 따라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서의 출입과 대한민국 내에서의 법적지위보장과 체류기간동안의 재외동포에 대한 각종 편의제공 및 효과적인 체류관리 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본 제도는 재외동포에게 국내체류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진 것으로 편의 제공 및 각종 활동의 지원 수단으로 활용된다.<sup>49)</sup> 우선, 출입국 및 체류에 있어서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 받는다. 국내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할 경우 재입국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취

47) 앞의 관리법 제 35조 및 앞의 시행 규칙 제 49조의 2.

48) 앞의 관리법 제100조의 2.

49)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법률」(이하 재외동포법) 제 9조-14조 참고.



업이나 그 밖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허용된다. 이는 외국인에게 부여할 수 있는 권한 중 가장 광범위한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다음으로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 건강보험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또한 외국환 거래에 있어서는 외국국적동포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거소신고 및 국내 거소이전신고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본 제도는 대한민국의 민족 특수성을 기초로 민족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한국 특유의 제도로 볼 수 있다.<sup>50)</sup>

재외동포(F-4)는 (1)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하 재외국민), (2)부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자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sup>51)</sup>

재외국민과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재외동포법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sup>52)</sup>를 정하여 체류지 관할 출입국 관리 사무소(출장소)에 거소신고를 하여야 한다. 거소신고를 통해 국내거소 신고번호를 부여받고 재외국민은 재외국민 국내 거소신고증, 외국국적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 거소신고증을 발급받는다.<sup>53)</sup>

발급받은 국내 거소신고증을 지닐 필요가 없게 된 때<sup>54)</sup>에는 사유가

---

50) 외교부 웹사이트, 재외동포정책 및 현황 참고. <[http://www.mofa.go.kr/travel/overseascitizen/index.jsp?mofat=001&menu=m\\_10\\_40](http://www.mofa.go.kr/travel/overseascitizen/index.jsp?mofat=001&menu=m_10_40)>(방문일자: 2014.08.15.)

51) 위의 재외동포법 제2조.

52) 거소(居所)라 함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장소를 말한다(재외동포법 시행령 제 6조).

53) 위의 재외동포법 제7조.

54) (1)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 (2)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상실한 때, (3)재외국민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때, (4)재외국민이 해외이주를 포기하고 귀국한 때, (5)재외동포가 국내에서 사망한 때, (6)외국국적동포가 재외동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만약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신군구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sup>55)</sup>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sup>56)</sup>

[그림 7] 한국 국내거소신고증



#### IV. 맺으며: 양국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

외국인등록제도는 한 국가에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경 내에서 생활하는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 한편으로는 외국인의 관리감독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

포체류자격의 체류기간내에 재입국할 의사 없이 출국하는 때, 재외동포법 시행령 제14조의 1.

55) 앞의 재외동포법 제6조의 2.

56) 앞의 「재외동포법」 제17조의 1.

용되기도 한다. 한국과 중국은 외국인 등록제도에 관해서 모두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양국에 체류하는 장기체류 및 영주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을 필수로 하고 있다. 외국인이 중국에서 장기체류할 경우 ‘거류신청’, 영주할 경우 ‘영구거류신청’을 하고, 한국의 경우 외국인이 장기 체류 할 경우, ‘외국인 등록’, 영주할 경우 ‘거소신고’를 하게 된다. 하지만 외국인 등록제도에 있어서 몇 가지 차이점을 보인다.

첫째, 외국인의 체류에 있어서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기준이 양국이 다르다. 한국의 경우 9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90일을 초과하여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외국인 등록을 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그 기준을 180일로 하고 있다.

둘째, 한국에 90일 이하로 체류하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체류 자격이 주어지는 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외국인 등록 없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다. 하지만 중국은 장기, 단기 체류를 불문하고 중국 경내에서 숙박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입국 후 24시간 내에 주숙등기를 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국인의 주숙등기 제도는 외국인등록제도에 있어서 한국과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중국은 개방 확대 및 해외 인력을 유인하기 위해 비취업 단기 체류 상한 기간을 180일로 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에 비해 2배 긴 기간으로 중국 체류 외국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주숙등기 제도를 더욱 강화시켜 중국 경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하지만 호텔 등을 제외하고는 외국인 본인이 직접 숙박지의 관할 공안기관을 찾아가 주숙등기를 해야 한다. 하지만 관광 등을 위해 중국에 입국하고 친지, 친구 등의 집에 머무는 단기 체류자의 경우는 주숙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단기 관광 외국인에게까지 주숙등기

를 요구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2013년 출입국 관련 법률이 통합되었는데 주숙등기 의무 사항 이행에 대한 처벌은 이전 보다 더 강화되었다. 외국인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어, 본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한 등록이다. 중국에 180일 이상 장기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거류증 발급 면제자를 제외하고는 입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류증 신청을 해야 한다. 반면, 한국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외국인등록 면제자의 경우는 제외이다. 중국의 거류증의 경우 따라 반납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다만 거류증 소지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는 그 가족 및 보호자 혹은 대리인이 규정에 따라 사망한 외국인의 사망증명자료를 가지고 현금 이상의 지방 인민정부 공안기관 출입경관리기관에 외국인 거류증 말소 신청을 해야 한다. 반면 한국은 등록 외국인이 완전히 한국을 출국할 때 반드시 소지하고 있는 외국인 등록증을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표 2] 한중 외국인등록 제도

		중 국	한 국
관련 법령		출입경관리법, 외국인출입경관리조례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시행령, 출입국관리시행규칙
일반 사증의 1회 체류 기한 상한		180일(취업사증 90일)	92일
체류외국 인의 의무	단기	24시간 내 주숙등기	없음
	장기	30일 이내 거류신청	90일 이내 외국인등록
	영구	영구거류신청	거소신고

# 한·중 양국의 국적법 관계

이 기 흠

(법무부 서기관, 변호사)

## 1. 서 론

우리 국민의 국적관계에 관한 법원(法源)에는 ‘대한민국 헌법’과<sup>1)</sup> 제헌 헌법에 따라 효력이 인정된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그리고 1948년 12월 10일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11차례 개정된 ‘국적법’ 등이 있다. 제헌 헌법이나 국적에 관한 임시조례가 있기 전에는 뚜렷한 성문의 규정이 발견되지 않고 관습이나 호적에 관한 제도가 이를 대신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후 일제강점기 하에서는 일본의 제도가 강제적으로 적용되었다. (그 밖에도 국제법까지 시야를 확대할 경우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을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와 관계된 논의를 생략하기로 한다)

우리나라 국적법의 주요 개정 연혁을 보면, 1976년 제3차 개정 국적법까지는 부계혈통주의를 기본골격으로 유지하였으나, 1997년 국적법 전면개정을 통해 부모양계혈통주의, 이중국적자 국적선택제도, 국민의 배우자 간이귀화, 처의 수반취득 및 단독귀화 금지조항 삭제, 국적판정제도 도입 등 큰 변화를 이루었으며, 이후 2005년 제7차 개정 때 병역의무자 국적이탈 제한 규정 신설, 2010년 제10차 개정 때 복수국적자의 법적지위 명문화, 귀화자 및 복수국적자 등에 대한 외국국적

---

1) 대한민국 헌법 제2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국적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한 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불행사서약제도 도입, 국적선택명령제도, 우수한 외국인재에 대한 특별귀화제도를 신설하는 등 시대에 따라 발전해 나가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 밖에도 현행 국적법은 총 2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행을 위한 상세한 내용을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법무부령)을 통해 구체화하고 있는 등 체계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

중국의 경우 1900년대 이전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문의 국적법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1909년에 이르러 청나라 정부는 최초의 성문 국적법인 대청국적조례(大清國籍條例)를 만들었고, 1912년 쑨원(孫文) 집권시기에 중국의 두 번째 국적법인 中華民國 國籍法을 만들었으며,<sup>2)</sup> 1914년 위안스카이(袁世凱) 정부가 민국삼년수정국적법(民國三年修正國籍法)을, 1929년 남경 국민당 정부가 민국십년수정국적법(民國十年修正國籍法)을 각각 공포하여 성문 국적법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1949년 수립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과거의 국민당 정부의 법률을 모두 폐지하고 이후 1980년까지 30년 동안 성문의 국적법이 없이 국적관계를 해결하였다가, 1980년 9월 10일 중화인민공화국 제5기 전국인민대표 제3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을 제정함으로써 성문 국적법의 명맥을 다시 유지하여 현재까지 이 법에 의해 중국인의 국적관계를 규율하고 있다.<sup>3)</sup>

현재의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이하, “중국 국적법”이라 한다)은

---

2) 엄해옥, “중국국적법에 대한 회고로부터 제한적 이중국적에 대한 구성”, 공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별쇄, 2012년

同旨: 김명아, “중국 국적회복절차 규정을 통하여 본 중국 국적법에 관한 소고”, 외법논집 제35권 제1호, 2011년

3) 김욱, “중국의 국적제도”, 법률신문, 2004년. 김욱은 이 자료에서 “중국 국적법은 홍콩과 마카오에서도 실시하고 있으나 홍콩과 마카오 주민의 국적 상황은 비교적 복잡하고 일부 특수한 문제가 있는데다 중국 현행의 국적법은 상대적으로 보다 원칙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회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1996. 5. 15.)과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을 마카오 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함에서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1998. 12. 29.)을 통과시켜 홍콩과 마카오에서는 이에 따른 중국 특별 행정구의 특유한 국적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총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지나치게 간결하고 구체적인 규정들이 없으며, 국적문제에 관하여 전국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입법해석만 있고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이 없으며 상응한 실시세칙도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4) (그 밖에도 국제법까지 시야를 확대할 경우 1955년 중국이 인도네시아와 체결한 “중화인민공화국고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이중국적 문제에 관한 조약”등을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와 관계된 논의를 생략하기로 한다)

## 2.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혈통주의)

우리나라 국적법 제2조제1항제1호는 출생 당시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인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출생지주의가 아니라 혈통주의를, 부계혈통주의가 아니라 부모양계혈통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함을 의미한다. 1998년 6월 14일 이전 국적법은 부계혈통주의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어 출생당시 아버지가 우리 국민인 자만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부계혈통주의가 헌법이나 각종 국제협약상의 남녀 평등원칙에 위배되고 국제조류나 시대적 여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적지 않아 제4차 개정(1997.12.13. 전부개정/1998.6.14시행) 이후 부모양계혈통주의로 개선하였다.

그 밖에도 국적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사람이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국적이 없으면,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혈통주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기도 하다.

---

4) 엄해옥, “중국국적법에 대한 회고로부터 제한적 이중국적에 대한 구성”, 공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별쇄, 2012년



중국 국적법 제4조는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국민이고, 본인이 중국에서 출생하였으면, 중국국적을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출생지주의가 아니라 부모양계 혈통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1998년에야 부모양계혈통주의로 바뀐 것에 비해 중국이 1980년 법률부터 일찍 이를 시행한 것을 보면, 남녀평등원칙에 대한 양국의 인식이 달랐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국 국적법 제4조는“본인이 중국에서 출생하였으면”이라는 요건이 있어 마치 출생지주의가 결합된 것처럼 보이나, 제5조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제5조는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국민이고,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하였으면, 중국국적을 보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제5조 후단은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국민이면서 외국거주하며, 본인출생과 동시에 외국국적을 보유하면, 중국국적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모 모두 중국인이지만 예를 들어 미국과 같은 출생지주의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어 자녀가 태어나면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출생자에게 중국 국적이 부여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릴 수 있게 돼 출생지주의가 일부 가미된 측면도 있으나, 이는 출생지주의를 적극적으로 원용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복수국적을 부정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아쉬운 점은 이러한 문리적인 해석이 중국 내 실무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알 수 없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는 세부적인 조사를 요하는 상황이다.

중국 국적법도 우리나라 국적법 제2조제1항제3호와 같은 예외적 출생지주의를 명백하게 인정하는 규정이 있는데, 중국 국적법 제7호 “부모가 무국적 혹은 국적불명이나, 중국에 장기거주하며, 본인이 중국에서 출생하면, 중국국적을 보유한다”가 여기에 해당한다.

### 3. 외국인의 귀화<sup>5)</sup>

우리나라 국적법은 ①일반귀화, ②간이귀화, ③특별귀화로 요건을 크게 3가지로 나눈 뒤 일반귀화 요건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을 기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간이귀화나 특별귀화는 일반귀화의 5가지 요건 중 일부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간이귀화 대상은 주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결혼이민자)인데, 결혼이민자가 간이귀화하려면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우리나라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 하며, 혼인상태나 배우자 사망 여부 등에 따라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참고로, 간이귀화한 결혼이민자가 매년 전체 귀화허가 받은 사람의 70~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중국인이 가장 많다.

중국 국적법 제7조에 따르면, 외국인이 중국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것이라는 공통 요건을 충족하고, 그 밖에 ①중국인의 근친속, ②중국

---

5) 2006년 임종인 의원은 귀화라는 용어가 일왕에 복속한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일본의 예를 답습한 것이라며 그 용어를 변경하기 위해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한 적 있었다. 하지만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중국 국적법은 ‘입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일본 국적법은 ‘귀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원래 ‘귀화’는 중국 고대정사에서 教化, 歸服의 의미로 사용되다가 점차 중화사상, 유교적 덕치이념과 연결되면서 이민족의 중국인화를 의미하게 되었다고 하며(박옥걸, 고려시대의 귀화인연구, 1987), 일본에서는 일본서기를 비롯한 고문헌에 자주 나타나는 말로서, ‘귀화인’은 王化를 흠모하여 도래한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함(우에다 마사야끼, 귀화인, 1985). 우리나라 역사서술에서는 귀화라는 용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은 아니나 投化, 來投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귀화가 중국의 전통적인 화이사상과 덕치주의에 입각한 점을 고려한 사대주의의 산물이라는 견해(박옥걸, 전개논문)가 있음”이라고 검토보고한 사실이 있다.



에서 장기 거주, ③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절차를 거쳐 중국국적 취득을 허가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국 국적법 제7조가 워낙 간략하게 규정되어 있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나, “중국헌법과 법률에 대한 준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는 중국에서 강제추방을 당한 자, 테러나 폭력을 할 것으로 추정되는 자, 밀수, 마약거래, 매음활동을 한 자, 정신질환자, 에이즈 바이러스 보유자, 성병, 폐결핵보유자, 경제능력이 없는 자, 입국서류를 위조한 자, 국가안전이나 국가이익을 침해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등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중국 외국인 출입국관리법 및 실시세칙 제1조 참조). 중국인의 근친속에는 신청자의 부모, 자녀 뿐 아니라 배우자도 포함되어 우리나라의 결혼이민자 간이귀화와 유사하고, 기타 정당한 이유에는 중국 혁명과 건설에 공헌이 있는 자와 중국국민이 입양한 외국적 자녀 등이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다. 6)

또, 귀화신청서류로는 신청서, 외국여권과 외국주민등록증사본, 국적 신청에 관련된 기타 자료, 사진 등이 필요하며, 신청은 중국 내 관할 공안국 또는 해외 중국공관에 할 수 있으나 최종 결정은 중국 내 공안부에서 한다. 7)

#### 4. 국적회복

우리나라 국적법 제9조제1항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과거 우리 국민이었던 자가 우리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를

6) 법무부, “국적취득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2002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7) 법무부, “국적취득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2002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명시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국적회복이 금지되는 대상까지 나열하고 있는데, 국가나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국적회복허가 신청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병적조회 또는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하는 등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중국 국적법 역시 국적회복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3조는 “과거 중국국적이었던 외국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중국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청서류로는 신청서, 국적회복 사유서, 외국여권 등본, 중국국적을 가진 적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호구부, 기민신분증 등), 사진 등이 필요하다.

중국인이 한국인과 혼인하여 간이귀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우리 국적법 제10조에 따라 원래 국적인 중국 국적을 포기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의 이행은 중국 국적법 제9조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행되는데, 제9조는 “외국장기거주 중국국민이, 자원 가입 혹은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즉시 자동적으로 중국국적을 상실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의 국적회복 절차와 관련하여 중국인의 한국인과의 위장결혼이 문제된다. 한국인과 위장결혼하여 간이귀화까지 한 중국인은 한국 국적 취득과 동시에 중국 국적은 이미 자동상실된 상태인데, 사후에 위장결혼 사실이 적발되어 혼인이 무효로 되면 한국 국적취득은 원인무효(또는 취소)될 것이고 결국 당사자는 적어도 외향상 중국 국적도 한국 국적도 없는 무국적자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먼저, 무국적자를 발생시키는 것이 허용되는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 문제는 “무국적의 감소에 관한 협약”(우리나라는 아직 가입하지 않음)을 참조할 만하다. 협약 제8조는 “체약국의 국적 박탈로 무국적자가 될 경우, 체약국은 그 국적을 박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허위진술 또는 사기로 취득한 국적인 경우”에는 체약국의 국적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조항을 함께 명시하고 있다. 위장결혼이 허위진술이나 사기의 예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다음으로 위장결혼이 적발되어 외향상 무국적자로 되었을 경우 중국 국적을 회복함으로써 무국적 상태를 빨리 해소해야 할 것인데, 현실적으로 중국국적회복이 쉽지 않다는 주장도 있어 문제다. 중국 국적회복이 쉽지 않은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 때문이기도 하나, 김명아의 연구를<sup>8)</sup> 통해 확인되는 다음의 3가지 점도 그 원인이 아닐까 한다. 첫째, 중국 공안부·외교부의 국적회복에 관한 몇 가지 규정이 있지만, 각 지역 공안국이 이 규정들 모두를 근거로 하는 것은 아니며 각 공안국마다 그 근거를 다르게 들고 있다. 따라서 국적회복 신청자는 해당 시·현급 공안국이 근거로 삼는 규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둘째, 중국 공안부는 국적회복 허가 유형을 (1) 당사자가 중국 국민의 근친속인 경우, (2) 당사자가 중국에 정착하여 거주하면서 수속을 진행 중인 경우, (3) 당사자가 중국 국내에서 적법하게 취업하였거나, 중국 국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원천이 있는 경우, (4) 당사자가 국외에서 혼인한 후 이혼하고 귀국하여 생활하려 하는 경우, (5) 당사자가 국외에서 출생한 미성년자이고, 중국국적의 부모를 따라 중국 호적을 만들기 위한 수속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6) 중국 공안부가 인

8) 김명아, “중국 국적회복절차 규정을 통하여 본 중국 국적법에 관한 소고”, 외법논집 제35권 제1호, 2011년

정하는 중국 국적회복 허가의 기타 유형, 등 6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외국인과의 위장결혼이 적발되어 다시 중국 국적을 회복하게 되는 경우를 이 6가지 중 어디에 포함시켜야 할지 마땅치 않다. 셋째, 중국 공안부 사이트에 게시된 관련 절차 내용에서 재외공관에 국적회복에 관한 심사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고 하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근거를 언급하지 않아 결국 재외공관에 중국 국적회복 신청이 가능한지 명확치 않다.

이처럼 중국 국적회복이 쉽지 않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 역시 국적회복 절차와 규정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따라서 앞으로는 중국 국적회복 절차가 일반인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쉽게 알려지도록 하는 노력이 더해져야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도 한국인과의 위장결혼이 원인무효이므로 애당초 한국 국적을 취득한 적도 없고 중국 국적도 자동상실되지 않았다는 등의 방향으로 법리적 검토를 할 수도 있겠으나,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도록 한다)

## 5. 복수국적

우리 국적법은 과거 단일국적주의를 원칙으로 천명하였지만 2010년 제10차 국적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이지만 상당한 부분에 걸쳐 복수국적의 문호를 개방하였다. 태어나면서 복수의 국적을 가지게 된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일정 연령이 되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지만, 선택을 할 때 외국국적을 국내에서는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이후 계속해서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과거의 국적법은 후천적으로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외국인은 우리 국적 취득 후 일정 기한 내에 원래의 외국 국적을 포기토록 하였으나, 제10차 개정 국적법은 65세 이상 고령동포, 결혼이민자,

해외입양인, 독립유공자 후손, 우수인재 등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만 하면 외국국적 포기 없이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 중국 국적법은 명시적으로 복수국적을 부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큰 대조를 이룬다. 중국 국적법의 복수국적 부정에 대한 근거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5가지 규정으로 설명된다. 9)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국민의 이중국적 보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 5 조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국민이면서 외국거주하며, 본인출생과 동시에 외국국적을 보유하면, 중국국적을 보유하지 않는다”

제 8 조 “중국국적을 취득하면 외국국적을 보유하면 안된다”

제 9 조 “외국장기거주 중국국민이, 자원 가입 혹은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즉시 자동적으로 중국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제13조 “중국국적회복을 허가받으면, 외국국적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제3조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률에 직접적으로 명시한 것인데, 이러한 입법례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드문 사례다.

제5조는 부모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이 출생과 동시에 외국국적을 보유하게 되면 중국국적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발생하는 것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다.

---

9) 1999년 중국 정치협상회의는 12명의 위원이 제출한 “중국국민의 이중국적 불허 규정 철폐에 관한 건의안”을 접수하였으나 중국 공안부는 이 건의를 거절하였으며, 2004년 “중화인민공화국국적법의 몇 가지 규정에 관한 수정 및 이중국적승인에 관한 선택적 대응에 관한 건의”가 있었으나 중국 정부는 1999년 답변과 마찬가지로 이중국적 불허의 방침을 천명하였다고 한다. (최승현, “화교화인의 이중국적 논쟁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26집 3호, 2008년)

제8조 및 제13조는 우리 국적법과 유사한 측면도 있다. 이 규정들은 외국인이 중국국적을 취득(귀화 또는 국적회복)하면 원래의 외국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우리 국적법 역시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외국국적을 포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 국적법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65세 이상 고령동포, 결혼이민자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보유할 수 있도록 2010년 개정 국적법에서부터 허용하였다.

한편, 중국 국적법 제9조는 중국인이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중국 국적은 자동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국적법 역시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자진하여 취득하면 한국 국적이 자동상실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호 유사한 측면이 있다.

중국 국적법이 왜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것인지, 그 이유에 관하여는 중국의 자문화 중심주의적 중화사상(中華思想) 때문일 것이라며 추측성 설명을 하는 견해도 있겠지만, 최승현의 연구 결과 10) 중 일부를 나뉘어 정리해 볼 때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는 듯하다. 첫째, 중국 국적법이 만들어진 1980년 무렵은 동남아시아 지역에 중국 화교들이 높은 경제적 지위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던 시기였기에, 당시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 정부가 화교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을 통해 화교를 중국에 유리하게 활용하려는 정책에 상당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反중국 정서로 인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견제, 중국위협론에 대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우려 등이 있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굳이 복수국적 허용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불안감을 키울 필요가 없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sup>11)</sup> 셋째, 복수국적 허용은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을 약화시킬 수 있

10) 최승현, “화교화인의 이중국적 논쟁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26집 3호, 2008년

11) 최승현은 “동남아 각국은 중국정부가 다시 화인의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더불어 이들을 중국정치의 대상으로 포섭코자 책동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였다. 이에 등소평, 이선녘, 덩잉초 등 중국 지도자는 곧바로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



었다. 이는 조선족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소수민족의 중화민족으로의 단결을 꾀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조선족이 중국과 한국의 국적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이 바람직하지 않게 보였을 것이다.

## 6. 결 론

우리나라와 중국의 국적법이 모두 일정한 시대적인 배경하에서 만들어졌지만 변화의 모습은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느 하나의 법률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보다는 양국의 법률을 유기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한데, 아직 선행된 연구결과가 많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현장에서 합리적인 국적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학계의 연구가 더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은 경제분야의 양국 협력이 주된 관심사이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결국은 국민의 지위에까지 관심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양국 국민들의 교류가 어느 때보다 증대된 상황이고 우수인재에 대한 경쟁적인 유치 과정에서 국적문제에 대한 관심도 계속 확대될 것은 자명하다. 앞으로 예를 들어 복수국적 문제와 같이 양국의 제도 차이로 인한 문제도 공론화되었을 때 제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한단계씩 준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핀, 버마를 잇달아 방문하여 이중국적 불허방침을 다시금 천명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이들 국가의 의심을 해소코자 노력하였다. 1980년 중화인민공화국국적법은 이렇듯 민감한 시대적 상황아래에서 탄생한 법령이었다”고 설명한다. (최승현, “화교화인의 이중국적 논쟁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26집 3호 266쪽, 2008년)



(붙임)

## 중화인민공화국국적법(中華人民共和國國籍法)

(1980년9월10일 제5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 통과 1980년9월 10일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위원장령제8호 공포 1980년9월10일 부터 시행)

제 1 조 중화인민공화국국적의 취득, 상실과 회복은 본법을 적용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통일된 다민족국가이고, 각민족의 사람은 모두 중국국적을 보유한다.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국민이 이중국적 보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제 4 조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국민이고, 본인이 중국에서 출생 하였으면, 중국국적을 보유한다

제 5 조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국민이고, 본인이 외국에서 출생 하였으면, 중국국적을 보유한다; 단 부모 쌍방 혹은 일방이 중국 국민이면서 외국거주하며, 본인출생과 동시에 외국국적을 보유하면, 중국국적을 보유하지 않는다.

제 6 조 부모가 무국적 혹은 국적불명이나, 중국에 장기거주하며, 본인이 중국에서 출생하면, 중국국적을 보유한다

제 7 조 외국인 혹은 무국적인이 자원하여 중국헌법과 법률을 준수 하고, 아래 열거조건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절차를 거쳐 허가되면 중국국적에 가입될 수 있다

- 一 중국인의 근친속;
- 二 중국에서 장기 거주;
- 三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 8 조 중국국적을 얻고져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즉시 중국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중국국적을 취득하면 외국국적을 보유하면 안 된다.

제 9 조 외국장기거주 중국국민이, 자원 가입 혹은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즉시 자동적으로 중국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제10조 중국국민이 아래 열거조건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에 의거 중국국적퇴출을 허가받을 수 있다

- 一 외국인인 근친속;
- 二 외국에서 장기거주;
- 三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11조 중국국적퇴출을 신청하여 허가받으면, 즉시 중국국적을 상실한다

제12조 국가 일을 하는 자와 현역군인은, 중국국적퇴출을 할 수 없다

제13조 과거 중국국적이었던 외국인인,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중국국적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중국국적회복을 허가받으면, 외국국적을 보유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중국국적의 취득, 상실과 회복은, 제9조 규정을 제외하고, 반드시 신청수속을 해야 한다. 만18세 미만자는, 그의 부모나 기타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신청 한다

제15조 국적신청을 접수 처리하는 기관은, 국내에서는 현지 시.현 공안국, 국외에서는 중국외교대표기관과 영사기관이다.

제16조 중국국적의 가입, 퇴출과 회복의 신청은, 중화인민공화국공안부가 심사한다. 허가를 하면, 공안부가 증서를 발급한다.

제17조 본법 공포 전에 이미 중국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상실한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제18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대중국인 비자발급 간소화에 관한 문제점과 대응방안

장은정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 I. 서론

20세기 후반 신자유주의의 심화로 인한 경제발전과 글로벌화의 확대로 해외관광을 포함한 거주지 이외의 국가로 이동하는 국제이주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세계 각국의 정치와 경제 등의 사회적인 변화와 함께 국가 정체성과 안보, 다문화와 노동시장의 탈국경화에 관한 논의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양국간의 FTA협상의 타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중국인들의 국내유입에 관한 문제가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경제성장을 필두로 다방면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거듭하여 2010년 말에는 일본을 제치고 GDP 세계 2위를 차지하는 등 명실상부한 G2국가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14억의 인구나 한반도의 40배나 되는 큰 면적을 가진 거대 국가로서 매력적인 내수시장을 앞세워 꾸준히 외국 투자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한·중 양국은 1992년 수교이후 정치, 경제, 문화 등의 각 영역에서 비약적인 성과를 이루었고,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교역국과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 한국 또한 중국의 제 3대 교역국으로서 전면적인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 현재 한국과 중국의 인적 교류는 더욱 활발해져 상업적 주재와 자연인의 이동증가로 인한 무비자

입국과 Transit Visa의 범위 확대 요청이 늘어나고 있으며 또한, FTA를 통한 양국간 투자유치와 교류의 활성화로 인한 인력이동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동안 중국 저숙련 노동자의 유입으로 인한 불법체류 등의 문제해결과 함께 고숙련 노동자의 유입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더욱이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저성장 구조의 장기화가 예측되는 상황하에 21세기 골뚝 없는 산업이라 불리는 新성장 동력인 관광산업 영역에서 양국의 밀접한 경제교류와 한류 영향을 바탕으로 2000년대 이후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우리나라의 경제활성화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이미 전세계 관광시장의 큰손으로 성장하였고 우리나라 또한 정부와 각 지자체별로 관광산업의 발전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작년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400만에 육박하였고, 그들이 주로 찾는 서울, 제주 등은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기를 띄고 있으며 향후 방한 중국관광객 천만 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 한국비자 받기가 번거로웠던 중국 관광객들을 위한 비자발급의 간소화는 당면과제가 아닐 수 없다. 비자절차 간소화로 인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효과에 관한 통계에 관하여 최근 UNWTO(세계관광기구)와 WTTC(세계여행관광협회) 공동조사에 따르면 G20 회원국들이 현재 복잡한 비자 절차만 개선해도 2015년까지 1억2200만명의 관광객을 추가로 유치하고, 50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중국 아웃바운드시장 1억명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국의 인접국인 일본, 싱가포르 등에서는 비자제도 완화 추세가 가속화 되고 있다. 특히 일본은 개별관광 비자 요건 완화, 의료관광 비자 도입 등 중국 관광객의 수요와 관광패턴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확대되는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시장과 한·중 FTA로 인한 서비스 인력이동에 대비하여 한·중 양국의 비자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비자제도 간소화 등의 비자문제 개선 방안

및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그리고 한·중 협력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중국시장의 성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 II. 한·중 양국의 비자관련 출입국 관리법률

출입국관리는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국내 체류를 심사·관리함으로써 국가의 안보를 우선시하는 통제관리의 국가행정이었으나 산업의 발달로 국가간 인적 물적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체류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의 개념이 새롭게 부각되어 오늘날 이민국가나 비이민 국가를 막론하고 외국인에 관한 정책이 국가의 중요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양국의 출입국관리법상의 비자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 1. 중국의 신출입국관리법

2012년 6월 30일 제11기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27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출입국관리법”(中華人民共和國出境入境管理法)(이하“출입국관리법”)이 통과되어 2013년 7월1일부로 시행되었다. 이 법은 1985년 제정된 “중국공민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출입국관리법”을 대체하여 제정된 것으로<sup>12)</sup>, 특히 외국인의 불법입국 및 체류 그리고 불법취업에 관한 규제와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새로 제정된 외국인 출입국 관련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출국금지 상황이 대폭 확대 되었다.

본법 제 28조 규정에서는 외국인이 아래의 상황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국을 금지한다.

12) 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 第九十三条 本法自2013年7月1日起施行。《中华人民共和国出境入境管理法》和《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同时废止。

- (1) 형사처분을 받고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또는 형사사건의 피고, 범죄용의자인 경우
- (2) 미결된 민사사건이 존재하여, 인민법원이 출국금지를 결정한 경우
- (3) 근로자의 근로보수를 체불하여, 국무원 유관부서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출국을 금지하는 경우
- (4) 법률이나 행정법규에서 출국을 금지하는 기타 상황

둘째, 불법입국 및 불법체류, 그리고 불법취업한 외국인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였다.

중국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은 해마다 증가하여 2012년 상해푸동공항에서 적발되어 처리된 불법체류자는 2540명에 이른다.<sup>13)</sup> 그리하여 새로운 신법에서는 외국인의 중국 입국 후 거류, 취업에 대한 관리와 밀입국,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의 내용을 법률 앞부분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 (1) 외국인의 불법체류에 관하여 제 78조 규정에서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경고를 주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불법체류일에 따라 1일 5백위안. 단, 총액이 1만위안을 초과하지 않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혹은 5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또한 82조에서는 외국인의 불법체류에 대하여公安부는 강제퇴거 시킬 수 있고 강제퇴거를 당한 외국인은 강제퇴거로 추방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재입국이 불가하다.
- (2) 외국인이 불법취업을 하였을 경우 5천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5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는 동시에 5천위안 이상, 2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경우, 고용주에게 매1인의 불법고용자마다 1만 위안 벌금을 부과하고. 단 총액은 10만위안 이하의 벌금에

13) 郑海龙, 熊晓玲, 《试论对外国人出入境人员的调查和遣返措施》, 上海公安高等专科学校学报, 2014年月第4卷第2期, 第66页。

한하며 불법소득이 있을시 불법소득을 몰수한다.<sup>14)</sup> 또한 제 43조에서는 불법취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규정에 따라 취업허가와 취업 서류증서를 취득하지 않은채 중국 경내에서 취업한 경우, 취업증에 명시된 범위와 유효기간을 초과하여 취업한 경우, 외국인 유학생이 고학관리 규정을 위반하고 규정된 일자리 범위와 기한을 벗어나 중국에서 취업한 경우를 불법취업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3) 국외퇴거 규정에 관하여는 제 6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외국인이 아래의 상황중에 하나가 있는 경우에는 송환시킨다. 출국제한 처벌을 받고도 규정한 기한 내에 출국하지 아니한 경우; 입국금지 사정이 있는 경우; 불법거류, 불법 취업을 한 경우; 이 법 또는 기타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송환이 필요한 경우 기타 경우, 기타 경외인원이 전 항에서 열거한 상황중의 하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송환시킬 수 있다. 피송환자는 송환된 날로부터 1-5년이내에 입국이 금지된다.

셋째, 외국인 입국시 숙박등기(住宿登记) 제도를 유지하였다.

중국 입국시 24시간내 숙박등기를 해야 하는 숙박등기제를 종전과 마찬가지로 유지하였다. 단, 여관에 숙박시는 여관이 등기를 대행하므로 불필요하며, 여관외 숙박시는 거주지 공안기관에 숙박등기를 해야 한다.<sup>15)</sup> 이를 위반할시 경고 및 2천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넷째, 제 7조 규정에서는 공안부와 외교부가 출입국관리의 필요에 따라 국무원의 비준 후 출입국자의 지문 채취 및 인체생활 식별정보를 남길 수 있도록 하여 입국시 지문대조 시스템의 시행근거를 마련하였다.

---

14) 중국 출입국관리법 80조

15) 중국 출입국관리법 39조, 外国人在中国境内旅馆住宿的, 旅馆应当按照旅馆业治安管理的有关规定为其办理住宿登记, 并向所在地公安机关报送外国人住宿登记信息。外国人在旅馆以外的其他住所居住或者住宿的, 应当在入住后二十四小时内由本人或者留宿人, 向居住地的公安机关办理登记。



## 2. 중국의 외국인출입국관리조례

중국의 외국인출입국 관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는 2013년 7월 3일 국무원 제 15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동시에 1986년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시행되어 1994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개정된 중국의 외국인출입국관리법실시세칙(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法实施细则)은 폐지되었다.

중국의 외국인출입국관리조례(中华人民共和国外国人入境出境管理条例)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1조 에서는 ‘비자의 발급관리와 외국인의 중국내 체류 및 거류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조례를 제정한다’라는 제정 목적을 밝히고 있으며 비자의 발급관리와 외국인의 중국내 체류 및 거류에 관하여 외교부,公安部 등 국무원 부서는 홈페이지, 및 비자신청 장소 등에서 외국인 출입국 관리 법률 및 법규 기타사항을 공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의 중국입국은 입국 목적과 상황에 알맞은 비자를 신청해야 하며 제 2장의 비자 종류와 발급에서 자세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새로 제정된 외국인 출입국 관리조례 중 비자발급에 관하여는 기존의 보통 8종 비자에서 12종류로 늘어났다. 폐지된 외국인출입국관리세칙에 의하면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의 종류는 방문목적에 따라 D, Z, X, F, L, G, C, J의 8가지<sup>16)</sup> 이나 본 조례에서는 기존의 비자제도가 가지는 비자종류와 입국사유간의 관련성 결여와 입국 후의 외국인에 대한 관리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자 비자 종류를 세분화 하여 8개서 12개로 조정하였다. 새로 신설된 비자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안 작성 중 다수의 해외 화교들의 중국방문 편의에 관한 요

---

16) D(거류비자), Z(취업비자), X(유학비자), F(교류, 방문, 시찰비자), L(관광비자), G(경유비자), C(승무, 항공, 해상운송비자), J(취재업무비자).

청의 증가로 Q비자가 새로 신설되었다. Q비자 사증은 해외화교들이 중국에 친척방문을 목적으로 신청가능하다.

둘째, R비자는 중국이 필요로 하는 외국의 고급인재와 수요가 시급한 전문가 등의 고급 인력에게 발급하며 이는 중국이 해외 우수인재 영입과 지식산업의 발전을 위해 출입국관리법에서 인재영입을 비자신청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였음을 의미한다. 중국정부 유관부서에서 확정한 외국의 고급인재 및 수요가 시급한 전문가 영입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마땅히 상응하는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세 번째로 M비자는 입국하여 상업적 무역활동에 종사하는 자에게 발급되는 것으로 본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중국내의 상업 무역합작 파트너가 발급한 초청장을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S비자는 S1과 S2가 있으며 S1의 경우 장기간 입국 친족방문을 신청하는, 취업 또는 학습 등의 사유로 중국내에 거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배우자, 부모, 만 18세 미만의 자녀, 배우자의 부모, 그리고 기타 사적인 용무로 중국내에서 거류해야 하는 자에게 발급한다. S2비자는 단기간 입국 친족방문을 신청하는, 취업 또는 학습 등의 사유로 중국내에 거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가족 구성원, 그리고 기타 사적인 용무로 중국내에서 체류해야 하는 자에게 발급한다.<sup>17)</sup> S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요구에 따라 취업, 학습 등의 사유로 인해 중국내에서 체류, 거류하는 외국인의 초청장,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입국하여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은 비자 연장, 갱신, 재발급 또는 체류비자 신청이 접수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는 유효기간이 7일을 초과하지 않는 접수증빙서류를 발급해야 하며, 동시에 접수증빙서류의 유효기간 내에 발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외국인이 규정에 따

---

17) 중국 외국인출입국 관리조례 제 6조.

라 신청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신청과정 중 허위로 날조한 경우, 중국의 관련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여 중국내에서의 체류 및 거류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으로 비자 또는 거류비자의 연장, 갱신, 재발급 승인 또는 체류비자 발급에 적합하지 않은 기타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공안기관 출입국관리기구는 비자 또는 거류비자의 연장, 갱신, 재발급을 승인하지 않으며 체류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

외국인 신분 조회에 관하여는 조례 2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융, 교육, 의료, 통신 등의 단위에서 필요시에 외국인 신분정보 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법률적 규정하에서 외국인의 국적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단순한 사실 여부만 확인 가능하다.

본 조례에서는 외국인의 불법취업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여 제 25조에서 네 가지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체류 및 거류비자상의 체류 및 거류 기한을 초과하여 머무는 경우, 둘째, 비자면제로 입국한 외국인이 면제기한을 초과하여 머물고 있으나 체류 또는 거류비자 수속을 밟지 않은 경우, 셋째, 외국인이 제한된 체류 또는 거류지역을 벗어나서 활동하는 경우, 넷째, 기타의 불법체류 상황. 외국인의 불법입국과 불법체류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22조에서는 외국유학생의 학교밖 근무와 실습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조례 26조에서는 외국인의 채용 및 유학생을 모집한 기관의 보고의무를 추가하였다.

### 3. 한국의 출입국관리법

우리나라 최초의 출입국관리 법령은 미군정시대의 “朝鮮에入國또는 出國者移動의管理及記錄에關한件(군정법령 제49호1946. 2. 19. 제정, 1946. 3. 11. 시행)”이 최초이며, 동 법령은 1949년 11월 17일 “외국인의입국·출국과등록에관한법률”로 대체되었다. 이는 출입국관리업무 수행

을 위해 대한민국정부에 의해 제정된 최초의 단일 법률로서 외국인의 입·출국 및 등록에 대해서만 규정하였을 뿐 국민의 출입국, 선원 등의 임시상륙허가, 선박 등의 출입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여 1963년 3월 5일 오늘날의 출입국관리 제도의 근간이 되는 “출입국관리법”을 제정·공포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출입국관리법”은 오늘날까지 타법 개정에 의한 개정을 포함하여 총 20차례 개정되었다.

2010년 5월 14일 개정은 외국인의 입국 및 등록 시 지문과 얼굴을 확인하는 절차에 응하도록 하고, 외국인 보호절차를 개선하며, 외국인의 국내체류 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① 보호를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된다고 의심할 만한 사람을 출국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인치(引致)하여 수용하는 집행활동으로 정의하고,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대면 출입국 심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출입국 심사로 갈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③ 17세 이상인 외국인은 입국심사 및 외국인등록 시 지문과 얼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④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력의 국내체류 편의를 위하여 근무처 변경·추가의 사전 허가제를 사후 신고제로 완화하고, ⑤ 국내 출생의 경우 자국 공관에서 여권을 신규로 발급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체류자격 부여 신청기간을 3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며, ⑥ 보호된 외국인이 원하는 경우에 국내 주재 자국 영사에게 보호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⑦ 보호된 외국인의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 면회·서신수수·전화통화 및 청원의 절차를 보호시설 안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며, ⑧ 난민인정을 신청하여 심사 중에 있는 사람과 난민인정에 대한 이의신청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강제퇴거의 집행을 유보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정하고, ⑨ 보호된 외국인의 보호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게 되면 3개월마다 법

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sup>18)</sup>

2011년 개정 내용은 결혼이민자에 대한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며 2012년 개정 내용은 출국금지 처분으로 인한 인권침해 예방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상륙허가제를 신설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의 적응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올해 일부 개정 내용은 금고형 삭제와 국내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변화된 환경과 시대의 흐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외국인보호소” 등의 조직 명칭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로 변경하기 위함이다.<sup>19)</sup>

한국의 사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출입국관리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거류기간의 長短에 따라 그리고 입국 목적에 따라 모두 30여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외교(A-1)사증 : 대한민국정부가 접수한 외국정부의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구성원, 조약 또는 국제관행에 따라 외교사절과 동등한 특권과 면제를 받는 자와 그 가족.
- (2) 공무(A-2)사증 :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자와 그 가족.
- (3) 협정(A-3)사증 : 대한민국정부와의 협정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이 면제되거나 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가족.
- (4) 사증면제(B-1) :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의한 활동을 하려는 자.
- (5) 관광통과(B-2) : 관광, 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자.
- (6) 일시취재(C-1)사증 :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자.

18) 「2011년 출입국관리법 해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1년 1월, 23면

19) <http://www.law.go.kr>(법제처 출입국관리법)

(7) 삭제(2011.11.1.)

(8) 단기방문(C-3)사증 : 상용활동과 관광, 통과, 친지방문, 친선경기, 회의참석, 문화예술, 일반연수, 종교의식 참석, 학술자료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동안 체류하려는 자.(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제외)

(9) 단기취업(C-4)사증 : 일시홍행, 광고, 강의, 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10) 문화예술(D-1)사증 :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술 또는 예술상의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11) 유학(D-2)사증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 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려는 자.

(12) 기술연수(D-3)사증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연수조건을 갖춘 자로서 국내의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13) 일반연수(D-4)사증 : 유학체류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이나 기업체, 단체 등에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활동에 종사하려는 자

(14) 취재(D-5)사증 : 외국의 신문, 방송 등 보도기관으로부터의 파견 또는 외국의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주재하면서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15) 종교(D-6)사증 :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단체로부터 파견되거나 대한민국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종교활동이나 사회복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정한 종교활동 또는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16) 상사주재(D-7)사증 : 외국회사의 본사나 지사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지사, 자회사 등에 필수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고자 하는 자.(기업투자 자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 (17) 기업투자(D-8)사증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 또는 생산·기술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 (국내에서 채용하는 사람은 제외)
- (18) 무역경영(D-9) : 대한민국에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경영하거나 무역 기타 영리사업을 위한 활동을 하려는 자로서 필수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자.
- (19) 교수(E-1)사증 :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는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20) 회화지도(E-2)사증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 어학연구소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21) 연구(E-3)사증 : 대한민국내의 공·사 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22) 기술지도(E-4)사증 : 자연과학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내의 공·사 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종사하고자 하는 자.
- (23) 전문직업(E-5)사증 :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인정된 외국의 변호사, 의사 기타 국가공인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법률, 회계 의료 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24) 예술홍행(E-6)사증 : 수익이 따르는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활동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 (25) 특정활동(E-7)사증 : 대한민국내의 공·사 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 (26) 방문동거(F-1)사증 :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체류하고자 하는 자.



- (27) 거주(F-2)사증 :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자, 그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 (28) 동반(F-3)사증 : 문화예술부터 특정활동까지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의 자녀로서 배우자가 없는 자
- (28-2) 재외동포(F-4)사증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28-3) 영주(F-5)사증 : 법 제 46조 제1항 각 호의 강제퇴거 대상이 아닌 사람으로서 규정에 해당되는 자
- (29) 기타(G-1)사증 : 외교부터 결혼이민까지, 관광취업 또는 방문취업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30) 관광취업(H-1)사증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협정 등의 내용에 따라 관광과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 (31) 방문취업(H-2)사증 :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 4. 양국의 비자제도 및 법률 비교

양국의 비자 관련 법률로는 양국모두 “출입국관리법”에서 국민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출국요건인 출국심사, 출국금지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며 또한, 외국인이 자국에 입국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입국요건인 입국심사, 입국금지대상자의 범위, 무비자 입국허가 절차, 비자발급 방법 및 절차,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발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새로 시행된 중국의 출입국관리법은 중국국민출입국관리법과 외국인출입국관리법을 통합한 하나의 새로운 법으로서 두 개의 분산된 법을 하나로 동일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이는 중국인들의 출입국, 외

국민들의 출입국, 외국인의 중국내 거류관리, 교통운수출입국관련 변방 검사를 주로 관할한다. 새로운 법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현대적인 관리방법과 정보화를 들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지문 등의 인체식별시스템을 도입하였고<sup>20)</sup> 관련 법규를 더욱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또한 제 1조 규정<sup>21)</sup>에 따라 대외개방의 촉진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외국인출입국방면에서 국제적인 시각을 넓혀 인재 비자라는 새로운 비자를 신설하여 외국인재 유치에 힘을 쏟고 취업, 유학, 친척방문, 여행, 비즈니스 등의 관련 사유로 인한 외국인들에게 관련 비자를 발급하고 알맞은 거류증을 발급하며 중국내에서 목적에 따라 비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행 중국의 출입국관리제도의 문제점으로는 중앙통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점과 출입국관련업무가 여러 관련 부서간의 중복으로 인한 관리의 혼란을 꼽을 수 있다. 즉,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으나 부서들끼리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하다. 아울러 신중국 성립 후 중국의 출입국관리 입법의 오랜 문제점인 입국은 쉬우나 출국은 어려운 현실에 대하여 중국의 학자들은 이는 세계적인 출입국관리 시스템과도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서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sup>22)</sup>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중국의 출입국관리제도와 타법간의 충돌도 해결해야 할 문제중의 하나로서 현행 출입국관리제도는 세계인권선언과 WTO규정의 투명성의 원칙 및 기타 원칙 그리고 헌법 및 형법 기타 법률과의 충돌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법제도 간의 충돌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어 한층 더 안정된 법률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sup>23)</sup>

20) 黄晟, 《深化改革我国出入境管理体制》, 法制博览2013 年第 05 期, 第227页。

21) 출입국관리를 규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안전 및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대외거래와 대외개방을 촉진시키기위하여 이 법을 제정한다.

22) 翁里, 沈敏鹭, 《改革中国出入境管理体制刍议》, 广西警官高等专科学校学报, 2014年第7卷第4期, 第52页。

중국의 비자발급기관으로는 국외에는 외교대표기관, 영사기관과 외교부가 권한을 위임한 기타 외국에 주재하는 기관이 있으며 국내에는 보통여권을 소지한 자에 대해 공안기관이 발급한다. 한국의 비자발급기관은 국외에는 법무부가 파견한 출입국관리공무원과 법무부 권한을 위임받은 외국주재 대표기관, 영사기관이 있으며 국내에는 공항만 소재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있다.

양국의 외국인 출입국 관리기관을 비교해 보면 중국은 공안부 변방관리국이 담당하고 있으며<sup>23)</sup> 한국은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에서 관리하고 있다. 외국인의 입국 후 거류, 여행의 관리에 대해 중국은 공안부 출입국관리기관, 성.자치구 직할시 출입국관리기관, 시와 현급 출입국관리기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은 출입국관리국과 각 지방의 출입국관리사무소 및 그 출장소에서 관리하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로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해서도 감시를 하고 있으며, 외국인이 입국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은 24시간 내에 숙박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다.<sup>25)</sup> 이는 외국인들의 동향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중국정부는 또한 중국국민들의 일반여권발급권한을 공항이나 항만에서 출입국을 직접 관리하는 부서인 공안부 출입국에 주어 여권 관리기관과 발급기관을 일치시켰다. 이는 출입국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조치라 할 수 있다. 그 외 외국인등록증을 없애고 외국인거류허가서를 여권 사증 면에 부착함으로써 외국인등록증 휴대의 불편함과 완전 출국시에 반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사전 방지했다.<sup>26)</sup> 중국의 비자는 현재 8종에서 12종으

23) 蒋剑云, 《现行出入境管理法律冲突问题研究——以法律条文为分析对象》, 福建警察学院学报 2013年第1期第67-72页.

24) 중국 출입국관리법 24조, 외국인은 입국할 때 출입국 변방검사기관에 본인의 여권이나 기타 국제여행증서, 사증 또는 기타 입국허가증서를 제시하여 검사를 받고 규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검사에 통과된 후에야 입국할 수 있다.

25) 중국 출입국관리법 제 39조.

26) 권택성, “중국 출입국정책 연구”, 법조 제60권 제5호 통권 제656호, 2011년 5월,

로 늘어났으나 아직 보완해야할 점들이 남아 있다. 중국에서 근무하거나 취업을 하는 외국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취업자의 신분의 식별을 쉽게 하기위해 비자를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가 다양화되고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외국인의 입국 목적도 다양해졌다. 이에 외국인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한국 정부는 거류의 목적에 따라 비자의 종류를 30여 종류로 세분화하여 한국에 오는 외국인이 입국 목적에 합당한 비자를 소지하도록 하였으며 각국에 대하여 비자제도를 점차 완화해 나가고 있다.

### Ⅲ. 한·중 양국의 교류현황 및 비자발급 간소화에 관한 문제점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세계 각국의 유치경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2008년 미국은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관광시장을 전면 개방하였고 대만은 중국과의 직항로를 개설하는 등, 이러한 중국인관광객 유치 경쟁은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국가여유국의 지난 5년간 관광통계에 의하면 중국인이 선호하는 해외여행지는 홍콩, 마카오, 일본, 한국, 러시아 등이다. 이러한 선호국 중에서, 중국해외 관광객들이 중국인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입국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로의 여행이 확대될 것은 자명한 일이며 관련 자료에 의하면 한국여행의 기피요인 중 하나가 부족한 관광인프라 외에도 복잡한 사증발급에 원인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중국인 관광객 뿐만아니라 FTA를 통한 중국투자협력 및 합작 파트너를 대상으로 한 한국 무비자 입국제도에 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고 이는 양국간의 관광 및 경제교류 협력차원을 넘어 한·중 양국의 관계와 국익에 부합될 수 있도록 연구되어야한다.

## 1. 한·중 양국의 교류현황

1992년 8월 수교 이래 한·중 양국관계는 제반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이러한 양호한 관계는 현재까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한·중 간 인적교류가 확대되고 상호이해가 심화됨에 따라, 정치·군사·안보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관계도 증진되고 있으며 수교 이래 20년간 교역규모는 64억불에서 2,151억불로 약 34배 증가하였고, 상호 인적교류 또한 13만명에서 691만명으로 53배 증가하였다. 2012년 12월 기준으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은 2.2만여개, 재중한국인수는 65만명, 양국간 직항은 매주 811편에 이른다. 한·중 양국은 '08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한 합의 등을 통해 한 단계 높은 관계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협력의 범위가 양자 차원에서 지역적·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고, 경제·사회·문화·정치·안보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이 강화된다는 것을 뜻한다.<sup>27)</sup>

2013년 한해 출입국자는 5천 4백 96만 명으로 우리나라 출입국 역사상 최대 기록을 갱신하였고 특히 중국인 입국자가 사상 처음으로 일본인 입국자를 120만 명이나 크게 앞질러 외국인입국자 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 2013년 중국인 입국자 수는 전년에 비해 43.6% 증가하여 총 400만 명이 입국하였다. 한국은 중국인의 주요 출국 목적지 국가 순위에서 홍콩, 마카오에 이은 3위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제주도는 중국인 관광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에 근접하고 있다. 중국인 입국자의 급증원인은 법무부의 환승관광 무비자입국프로그램 시행과 크루즈관광객 출입국심사 간소화, 복수비자 및 전자비자 발급대상 확대와 함께 재외공관의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등이 복합적으로

27) <http://chn.mofa.go.kr/korean/as/chn/policy/relation/index.jsp> 주중대사관 홈페이지 자료 참고.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sup>28)</sup>

2013년 국내 체류외국인의 현황을 살펴보면 총 체류 외국인은 1576034명으로 작년 대비 9.0%증가하였다. 국내 체류외국인의 체류목적별로 살펴보면 방문취업자 등의 외국인 근로자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재외동포, 결혼이민자, 영주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49.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인들은 91일 이상 장기체류 등록 외국인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었으며 방문취업자와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모두 중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sup>29)</sup> 중국인 관광객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아울러 중국 및 구소련 동포에게 재외동포 자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국내체류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지속적인 출입국자 증가에 대응하여 출입국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중국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해 단체관광객에 대해 전자비자를 발급하고 중국공관 등에 급행비자제도를 실시하는 등 비자발급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어 양국의 인적 교류 및 방한 중국인의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2. 방한 중국인 대상 비자제도 운영 현황

방한 중국인에 대한 비자는 체류기간에 따라 단기비자와 장기비자, 입국 가능 횟수에 따라 단수비자와 복수비자로 구분된다. 단기비자는 입국일로부터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 발급되며 장기비자는 입국일로부터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급된다. 또한 단수비자는 1회 입국에 한정하고 복수비자는 2회 이상 입국이 가능하다. 단기비자는 업무관련비자와 방문비자를 포함하고 장기비자는 한국에서의 교육관련 비자, 업무 및 취업비자, 거주비자를 포함한다. 그 외에도 관

28) <http://www.moj.go.kr>, 법무부 보도자료 참고, 2014.01.15

29) 「중국의 여행 관련 법제와 관련 현황」,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자료집 2014.4.25.



광비자가 있으며 이는 단체관광비자와 개별관광비자로 나누어진다.

### 1) 무비자 제도

법무부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추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확대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무비자 입국허가 대상 국가를 기존 169개 국에서 중국을 포함한 180개 국으로 확대하였고 2008년 3월 중국公安부가 제주도를 자국민의 무비자 출국허용 지역으로 인정하면서 실질적인 제주 무비자 제도가 시행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 무비자 입국허가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사가 초청하는 단체관광객, 한·중 양국정부 지정 전담여행사 또는 한국일반여행협회 지정여행사,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가 초청하는 5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 1996년 1월 1일 이후 1회 이상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중국인으로서 외교·공무·인공보통여권 소지자에 한한다. 또한 올해 4월 6일부터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의 대상 지역을 기존의 인천, 김해 국제공항에서 양양·청주·무안 국제공항으로 확대하였다. 2012년 10월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이 인천, 김해공항을 거쳐 제주도로 가는 경우에 한하여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왔으나, 앞으로는 양양, 청주, 무안 공항을 거쳐 제주도로 가는 경우에도 인근 지역과 수도권에서 비자 없이 72시간 동안 머물 수 있도록 하였다.<sup>30)</sup>

### 2) 관광상륙허가제

관광상륙허가제는 2012년 1월 26일 출입국관리법에 신설되어 5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항하는 크루즈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 승객에 대하여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신청 시 3일 범위 내에서 개별심사 없이 입국을 허가할 수 있다.

30) <http://www.moj.go.kr>(법무부 보도자료 2014.03.20.)



### 3) 복수비자제도 개선

2007년 4월 1일부터 중국인에 대하여 복수비자 발급 대상이 확대됨, 복수 단기상용(C-2)비자의 발급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복수 단기종합(C-3)비자 발급대상이 추가되었다. 그리고 2008년, 2010년 2012년에 걸쳐 중국인 복수비자 발급대상을 추가적으로 확대하였으며 대상요건을 완화하였다. 2010년 8월 1일부터 제출서류를 최대 2종으로 간소화하고 1년 유효 복수비자 발급 경력자에게는 차기 발급 시 비자 유효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였다. 2012년 8월 1일부터 최초 발급 시 1년 유효로 발급되던 복수비자 유효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으며 3년 유효 복수비자 발급 경력자에게는 5년 유효 복수비자를 발급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대상을 복수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미성년 자녀, 국내 소재의 콘도미니엄 회원권(3,000만원 이상) 소지자, 북경·상해 지역 호적소지자 (중국 호구부 기준) 및 211공정대학(정부지정 우수대학 112개) 재학생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 4) 개별관광객 대상 비자제도 및 특정 대상 비자제도

개별관광 비자신청 서류의 간소화 및 대상별 제출 서류의 간소화와 그 외 2007년 4월 1일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었다. 그리고 2008년 4월 21일부터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비자제도를 시행하였고 2009년 5월 의료관광객을 위한 전용비자제도인 의료관광 비자를 신설하였다.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을 선정하여 전자비자를 대리 신청 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국인 환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개선하였다.

### 3. 방한 중국인 비자발급 간소화에 관한 문제점

해외 관광과 유학, 취업 등의 이유로 해외로 나가는 중국인들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이들 중 다수를 차지하는 해외 관광객들은 세계 관광시장의 블루칩이라 불릴 정도로 소비지향적인 면모를 드러내어 한국을 비롯한 중국의 주변국들은 동시다발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각종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한·중 FTA체결로 인한 관광산업의 발전과 인적교류 확대 및 투자유치를 통한 경제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이와 관련된 장벽을 없애는 것이 FTA 협상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다. 특히 중국과는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양국 모두 관광목적의 단기 방문자의 경우 번거로운 절차에 의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최근 관광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단체방문객의 경우 방한비자 발급절차가 간소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속적인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비자면제를 포함한 비자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중국과의 FTA협상 타결로 인한 인력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관광객유치 뿐만 아니라 통번역과 가이드, 중국어 강사, 요리사, 무술강사 등의 특정 분야의 외국인 고용 및 고속련 전문가의 유입에 관한 양국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민감한 사항에 해당되어 양국의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뉴질랜드와의 FTA에서 인력 이동에 대해 합의하고 중국 가이드, 한의사 및 간호사, 중국어 강사, 요리사, 무술강사 등의 직종 중 뉴질랜드 당국이 자국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부문에서 중국의 숙련노동자의 임시고용을 양허하였다. 그간 한·중 양국은 국가 간 협정 체결이 의미를 갖지 않은 저숙련 노동자의 이동이 있어왔으나 숙련노동자의 고용은 드물었다. 한·중 FTA체결과 중국인에 대한 비자제도를 완화하여 저숙련 노동자와 합

게 자격증과 기술을 가진 숙련노동자들이 유입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sup>31)</sup>

중국인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와 무비자 등의 입국비자 완화는 현재 동전의 양면과 같이 즉각적인 관광객 증가와 함께 불법체류자 증가로 나타날 수 있다. 우선 중국인에 대한 비자제도 완화의 긍정적 요인을 살펴보면 양국 간 인적교류가 확대될 것이며 방한 중국인 관광객 수 증가로 인한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노동력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이다. 교류의 활성화는 관광객의 증가를 유발하며, 일차적으로 관광산업에 많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칠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의 구전효과, 한류효과 등을 통한 2차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인력은 내국인들이 꺼려하는 직종에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구인난에 허덕이는 국내 일부 직종에 단비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반대로 부정적 요인으로는 저숙련 노동자의 불법체류 전략과 중국의 숙련 노동자 즉 고급인력의 증가로 인한 노동시설의 분절화와 경제발전 저해, 사회적 비용 증가, 사회적 갈등의 심화와 국가 간 갈등 증가 등이 예상된다. 불법체류자로 전략할 가능성이 큰 중국의 저숙련 노동자와 고급노동자들이 국내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내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저하 및 불이익을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노동의 분절화가 진행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유입은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국내 경제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며 내국인의 실업문제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 세수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나머지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초래한다. 마지막으로 불법체류자의 증가는 범죄의 증가와 주거환경의 악화 등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킬 수 있다. 불법체류자에 의한 범죄 등의 증가는 사회

---

31) 장은정, “한·중 FTA 관련 관광서비스 분야의 영향과 대응방안, 법학논고 제 46집, 2014.5, 477면.

질서를 위협할 수 있고 다민족 다문화 공동체의 형성으로 사회갈등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시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 범죄 등의 문제에 대해 송출국과 여러 가지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sup>32)</sup>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우리 측에서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입국비자 발급요건 완화를 통해 비자발급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중국인관광객을 적극 유치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비자유건 간소화로 관광목적 입국자수를 늘리는 것과 동시에 관광목적 입국자들이 기한 내 출국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취업목적으로 불법체류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 IV. 대중국인 비자완화에 따른 대응 및 협력 방안

##### 1. 비자제도 개선에 관한 논의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외국노동력 수요의 증가와 국제결혼 증가로 인한 결혼이민자 증가, 외국국적동포 유입, 유학생 증가 등으로 국내 체류외국인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sup>33)</sup> 그 중 관광객을 포함한 중국인 입국자의 급증을 요인으로 경기부흥과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더 많은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비자제도와 출입국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한 중국인들을 위한 비자제도 간소화와 비자발급대상 확대는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단기 방문객들에 대한 무비자에 관한 논의 또한 검토되어지고 있다.

32) 이원식, 윤문길, “방한 사증제도 개선에 따른 중국인 방문객 유인효과”, 한국항공경영학회지 제 6권 제4호, 2008년 12월, 173면.

33) <http://www.index.go.kr>(통계청 e-나라지표 통계자료 참고)

우리나라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경우는 네 가지이다. 그것은 재입국허가를 받은 자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자, 한국과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된 국가의 국민, 국익을 위하여 입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국허가를 받은 자, 난민여행증명서를 발급받은 자 등이다. 즉 한국에서의 무비자입국은 외교관여권·관용여권·일반여권·난민여행증명서를 소지자로서 상기한 네 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비자 없이 입국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제3국 여행 통과여객, 유럽지역을 여행하는 중국인 통과여객, 제주특별자치도 무비자입국 해당자, 국제기구 발급여권(Laissez-Passer)소지자, APEC 경제인 여행카드 소지자 등은 한국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무비자입국 허가 대상 국가는 국제관례·상호주의·국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되며, 관광 또는 방문 목적에 한하여 무비자입국이 가능하다. 미국 이민국의 2008년 보도 자료에 의하면, 무비자입국이 가능한 국가로 지정되는 기준 및 규정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 그것은 국제관례와 상호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자국 국민에게 무비자입국을 허용하는 국가이어야 하며, 자국 비자 거부율이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고, 불법체류비율이 일정수준 이하로 낮아야 하고, 국익 차원에서 무비자사증입국 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sup>34)</sup> 2006년 이후 한국의 국제관광 수치적자 중 대 중국 적자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대중국 관광수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내수 진작을 위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 전략의 일환인 비자제도 개선이 정책적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한국 무비자 입국허가가 그 내용중 하나이다. 무비자입국허가의 근거로는

34) 주동근, “정책논변모형을 이용한 한국 무사증입국제도에 관한 연구:중국인 관광객의 무사증 입국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제22권 제1호(통권 제50호), 2010년, 364면.

한국 인바운드 관광에 있어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리고 국내불법체류자 다수 발생국가 15개국 중 하나로 중국을 지목하고 그 사회적 부작용을 우려해 중국을 무사증입국허가대상국가에 계속 제외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중국의 불법체류자 문제는 중국인 못지않게 재중교포의 비중이 높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중국인 관광객을 위하여 한국 무비자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근거는 미국 무비자입국제도 시행과 방미수요 증가에 대한 예를 들 수 있다. 미국과 VWP(Visa Waver Program)해당 국가 대부분은 예외 없이 입국비자면제 조치 이후 방미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입국비자면제조치 실시 3년째 되는 해에 방미수요가 50% 이상 증가한 국가가 13개 국가로 전체 해당 국가의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1986년 VWP 국가에 포함된 일본은 1987-1989년 관광객이 전년대비 각각 27%, 51%, 83% 증가하였다. 핀란드, 영국 등의 경우도 3년째 되는 해에 100-200%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35)

그러나 이와 반대로 우리나라 불법체류자의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입국한 외국인 중 단기방문, 관광통과, 유학, 기술연수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자들의 불법체류가 높게 나타나 불법체류 문제를 비자제도로 통제하기가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방한비자제도 개선과 중국인 불법체류 과급효과를 분석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중국인 단기방문자 비자면제에 따라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나 방문객 증가에 따른 불법체류자 비율은 다른 국가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36) 그러나 중국인 불법체류자의 전체 규모가 커서, 범죄에 노출되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비자면제에 따라 입국한 중국인에 대한 입국심사 강화

35) 주동근 앞의 논문 327면.

36) 이원식, 윤문길, “방한 사증제도 개선과 중국인 불법체류 과급효과분석”, 서비스 마케팅저널 제2권2호, 2009년, 45면.



를 위한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고 법무부와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 및 강제출국제도와 함께 자발적 본국 귀환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여 불법체류자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불법체류자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에서 중요한 정책의 하나가 사회적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이다. 즉, 인력부족 산업군에 대해 합법적 해외 노동인력 공급을 확대하여, 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등 불법체류자 고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법체류 동인을 없애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 2. 다른나라 비자제도 개선사례

해외 주요국의 중국인 대상 비자제도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호주와 프랑스는 비자 접수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을 구성하여 비자신청 관련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증가하는 비자 신청 수요에 대응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sup>37)</sup> 미국은 방미 중국인들의 수요 증가로 비자발급 인력 충원과 창구를 확대하였으며 싱가포르는 2004년 10월에 온라인으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절차상의 편의성을 개선하였다. 일본은 상용목적 방문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상용목적 복수비자 발급 대상을 국영 중대형 중점기업, 중국에서 공업등기를 한 기업, 일본에 경영기반을 갖고 있는 일본계 기업, 일본 주식상장기업이 출자하고 있는 합병기업, 일본의 주식상장기업과 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 등으로 총 5개의 범위로 나누었다.<sup>38)</sup> 또한 일본은 의료관광 비자 발급시 친척 이

37) 호주이민·국민사무부는 비자접수 서비스 전문기관인 VFS와 협약을 통해 호주비자신청센터(AVAC)를 설립·운영 중이고 프랑스 정부는 2011년 7월부터 비자 접수를 담당하는 전문기업을 선정해 관련 업무를 위탁했다. 미국대사관은 영사인력 50명을 충원하고 관련업무 창구를 확대했다.

38) 우리나라의 상용 목적 복수 비자 발급 대상은 첫째, 중국기업연합회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의 과장급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사람; 둘째, 100만 불 이상



외의 경우에도 간병 목적의 동반자는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의료관광 비자 신청시 동반자는 가족 및 친척으로 제한하고 있어<sup>39)</sup>이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종합하면 각국에서는 비자제도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접근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IT강국의 장점을 살려 온라인 비자발급 시스템 및 E-비자 등 비자발급 편의성을 개선과 비자신청 수요 증가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3. 대중국인 비자완화에 따른 대응체계 구축 및 협력방안

한·중 양국은 2013년 6월 27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선적 외교관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양국이 맺은 최초의 비자 면제 협정으로, 한국과 중국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상대국을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간 체류할 수 있게 됐으며, 양국이 논의를 시작한 지 약 8년 만에 체결된 것이다. 같은해 한국과 러시아는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여 2014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협정발효 이후 2014년 1분기 양국 간 인적 교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러 비자면제협정 발효의 예와 같이 한·중간에도 일반인들에게 비자면제를 확대한다면 양국 간 다방면에서 또 다른 비약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현재 양국의 경제협력의 중요도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중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72시간 무비자입국제도로는 양국 간의 늘어나는 다양한 인적교류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나 방한 중국인 수를 늘리기 위해 중국인에 대한 전면적인 무비자를 실시한다면 국내 내수 진작 등의 긍정적인 면이

---

우리나라에 투자한 기업의 임직원.

39) 신용석, 김현주,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요국 비자제도 개선사례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년, 74-112참조.

많은 이 문제는 경제적 효과만 고려하여 시행하기에는 불법체류자 발생 등의 사회적 고려 요인이 많으며 또한 비자면제는 양국 간 협상에 의하여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즉각적인 실시가 어려운 사안이다.<sup>40)</sup>

앞서 언급한 전면적인 무비자실시의 부정적 요소를 고려한다면 중국의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식의 조심스러운 정책추진과 실용주의 노선을 거울삼아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현재 새만금 한·중경제협력단지 조성의 추진이 가시화되고 있어 이러한 경제단지와 중국의 경제특구, 관련지역의 협력 투자단을 우선으로 한 부분적인 무비자 제도의 실시와 동시에 무비자 지역을 한·중 항공자유화 지역과 연계하여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면 중국관광객과 기타 자연인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져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여러 산업발전이 기대되며 무엇보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전에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해결이 이루어져 올림픽을 통한 내수진작에 힘써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2006년 한·중 항공회담에서 합의된 부분적 항공자유화를 통한 2010년 전면적인 항공자유화의 실현 계획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sup>41)</sup> 현재 중국 중서부지방의 한·중항공노선 확대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으며, 한·중항공회담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한·중항공자유화가 발효된다면, 인천국제공항 뿐만 아니라, 지방 공항들도 중국 공항에 대한 취항을 최대한 늘릴 수 있을 것이다. <sup>42)</sup>이러한 논의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인력이동의 경제협력 대상국이자 불법체류자 송출국인 중

40) 이원식, 윤문길, “방한 사증제도 개선에 따른 중국인 방문객 유인효과”, 한국항공경영학회지 제 6권 제4호, 2008년 12월, 182면.

41) 한·중항공자유화는 2006년 한·중항공회담에서 중국 산둥성, 하이난성간 항공운항이 무제한 허용하고, 2010년에 전면적 항공자유화를 이루기로 합의했지만, 2014년 현재 한·중항공자유화는 실현되고 있지 않으며, 3년만에 개최된 2014년 4월 한·중항공회담에서 스자좡, 난닝, 인촨, 연청, 자무스 등에 대하여 신규노선을 개설하는데 그치고 있다.

42) <http://www.incheonnews.com>(인천뉴스 기사 참조)

국과의 대화를 통하여 문제를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관련 부문의 협의체 구축을 통한 양국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양국 국민들의 비자면제에 관하여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양국 간의 협이가 관건이며 중국인들 대상으로 한 비자발급 간소화에 대한 국내적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부처 간의 협의체 구축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자제도는 외교통상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가 관련돼있어 어느 한 부서의 단독의 노력으로는 개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부서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협의체 구축이 시급하다.

둘째, 전문적인 비자접수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담당 행정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 주요국들 사례와 같이 비자접수 전문기구를 신설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등의 전문성과 그에 걸맞은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IT강국이라는 한국의 장점을 살리고 비자발급의 편의를 위해서 e-비자와 연계한 온라인 시스템 도입하여 접근성을 쉽게 하여야 한다.

넷째, 상용목적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복수비자 발급 확대와 의료관광객 대상 비자발급 기준을 완화하고 개별비자 소득수준에 대한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하도록 한다. 아울러 중국내 본적지 및 거주지 기준을 더욱 완화하도록 한다.

다섯째 비자 발급기준의 표준화 작업 구축, 특히 영사관별 비자 신청 서류를 표준화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비자의 경우 불법체류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으므로 비자완화 과정에서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불법체류는 여러 가지 한계상황으로 인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불법체류가능자를 걸러내기 위한 입국심사과정을 더욱 강화하고 온라인 비자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법정책적 방안으로는 근로자가 노동권리의 주체가 되고 체류기간을 충분히 보장하여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정된 정주화가 가능하도록 하여 불법체류를 방지하도록 법으로서 보장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sup>43)</sup>

이제 중국은 우리에게 있어 경제협력 동반자 이상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중FTA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사실이나 지역화와 블록화의 세계적인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으며 양국간의 인적, 물적 교류 확대는 지금보다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어 양국민들의 상호방문 편의와 양국의 경제성장 및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긴밀히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양국간의 비자면제를 확대해나가야 하며 동시에 불법체류에 관한 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인력이동의 편의를 위해 한·중항공자유화를 협정을 조속히 체결해야 할 것이다.

## V. 결 론

현재 중국인들의 해외여행 저변 확대에 의한 관광산업의 성장은 중국의 주변국을 비롯한 전세계 각국이 주목하고 있는 현상이다. 특히 우리의 경쟁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 싱가포르를 비롯한 인접국들과 선진국들 또한 중국인 해외여행객들의 소비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가장 주목하여 발빠르게 중국인관광객이 자국을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관광이나 사업 또는 취업과 유학을 목적으로 한 방한 중국인의 유치확대는 내수활성화의 목적 뿐만아니라 한·중 간의 인적교류 불균형 해소와 관광수지 개선의 효과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할 사안중의 하나이다. 특히 중국은 세계 최대 아웃바운드 해외관광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어 중국인 관광객 유치와 한·중 FTA 서비스 영역별

43) 「출입국관리상 인권제고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불법체류외국인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년 2월, 445-463참조.

개방으로 인한 양국의 서비스인력의 교류 확대를 중심으로 하는 대응 전략 마련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인들의 방한과 양국의 인적 교류확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국인 관광객을 위한 무사증 입국허가 및 인터넷 비자 또는 도착비자 등의 방한비자의 개선은 사업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한 방문객의 증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의 발전과 관련 산업의 인력수요 증대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방문객 증가에 따라 필연적으로 증가하는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방한비자 완화 시 입국심사를 강화하고 방문 중국인의 추적관리를 통한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생체인식 기술 등 첨단 IT기술의 도입과 사회적 감시기능의 강화와 함께 외국인 노동자들의 장기체류를 보장하여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중국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불법체류자의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양국의 지속적인 전면적 전략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양국정부는 경제특구와 항공자유화지역 중심으로 민간인 비자면제를 조속히 추진하여 한·중간 협력과 우호관계 증진을 위한 행동을 실천해나가야 한다.

## 참 고 문 헌

「2011년 출입국관리법 해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1년 1월

「2013년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4년 5월

권택성, “중국 출입국정책 연구”, 법조 제60권 제5호 통권 제656호, 2011년 5월.

「중국의 여행 관련 법제와 관련 현황」,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숍자료집 2014.4.25.

「출입국관리상 인권제고를 위한 형사정책적 대응-불법체류외국인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년 2월.

장성수, 이성은, 오창현, “제주특별자치도의 무사증 입국제도를 활용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확대 방안”, 한국관광학회 2011년 제 69차 학술대회 및 연구논문 발표대회, 2011년.

장은정, “한·중 FTA 관련 관광서비스 분야의 영향과 대응방안, 법학논고 제 46집, 2011년 5월.

이원식, 윤문길, “방한 사증제도 개선에 따른 중국인 방문객 유인효과”, 한국항공경영학회지 제 6권 제4호, 2008년 12월.

이원식, 윤문길, “방한 사증제도 개선과 중국인 불법체류 파급효과 분석”, 서비스마케팅저널 제2권2호, 2009년.

신용석, 김현주,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요국 비자제도 개선사례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년.

주동근, “정책논변모형을 이용한 한국 무사증입국제도에 관한 연구:

중국인 관광객의 무사증 입국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연구 제22권 제1호(통권 제50호), 2010년.

郑海龙, 熊晓玲, 《试论对外国人出入境人员的调查和遣返措施》, 上海公安高等专科学校学报, 2014年月第4卷第2期。

黄晟, 《深化改革我国出入境管理体制》, 法制博览2013年第05期。

翁里, 沈敏鹭, 《改革中国出入境管理体制刍议》, 广西警官高等专科学校学报, 2014年第7卷第4期。

蒋剑云, 《现行出入境管理法律冲突问题研究——以法律条文为分析对象》, 福建警察学院学报 2013年第1期。

国向东, 《重构我国出入境管理法律体系的思考》, 哈尔滨学院学报, 第33卷第5期 2012年5月。

주중대사관(<http://chn.mofa.go.k>)

법무부(<http://www.moj.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go.kr/>)

통계청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

公安部出入境管理局(<http://www.mps.gov.cn>)

中华人民共和国国家旅游局(<http://www.cnta.gov.cn>)



## 중국의 영주제도 현황과 시사점

최 윤 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

### I. 들어가는 말

중국의 영구거류제도는 2004년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도입 1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영구거류허가를 획득하여 중국에 무기한으로 거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경제발전과 이른바 ‘굴기’를 위하여 신기술자 자본 유치에 적극적인 중국은 외국의 사례에서처럼 외국고급인력과 투자를 유치하고 중국계 외국인들의 회귀를 위한 목적으로 <그린카드>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제도상이 문제점 등이 중국내부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글은 중국의 <외국인영구거류제도>에 대한 내용과 운영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찾아내어 우리나라의 영주권 제도의 발전에 참고할 사항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II. 중국의 영주제도

#### 1. 의 의

##### 1) 중국의 영구 거류 제도 개요

중국의 영주권을 의미하는 중국녹색카드(中国绿卡) 제도는 1985년 ‘외

국인출경입경관리법’에서 처음 도입되었다.<sup>1)</sup> 이후 2004년 기술, 투자 및 친족의 영주거주를 위하여 중국 공안부와 외교부가 공동으로 발령하고 공포한 ‘外國人永久居留審批管理辦法’(이하 ‘영구거류관리법’)이 제정된 후부터 실질적으로 영주권제도가 시행되고 있다.<sup>2)</sup> 그러나 해당 ‘영구거류관리법’에 따른 중국에서의 외국인 영구거류신청과 영구거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의 수가 극히 적어서 영구거류제도가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sup>3)</sup> 그에 따라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은 ‘영구거류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의견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의 경우에도 현행 ‘영구거류관리법’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sup>4)</sup>

## 2)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

### (1) 입법취지

‘영구거류관리법’은 영주거류신청지침과 업무규범 마련이라는 형식적 목적 이외에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외국의 우수인재와 외국자본의 유치를 통한 중국의 경제발전, 국제적 의무 이행, 중국인과 영주거류를 하는 거류민과의 우호관계와 난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실질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음을 밝히고 있다.<sup>5)</sup>

\* 이 글은 법제연구원의 2014년 8월 29일 워크샷을 위해 간략히 작성된 글입니다. 완성된 글이 아니므로 인용하거나 전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1) 刘国福, 简论外國人在中国永久居留(中国绿卡)制度, 河北法學 第26卷 第3期, 2008. 3, 1項.
- 2) 胡蓓蓓/宋琳琳, 彭程, 郁明, 程启博, 我國“绿卡制度”完善研究, 辽宁警专學報, 第85期, 2014. 5(第3期), 41項. 여기서 이 법률의 제정으로 중국의 녹색카드제도가 정식적으로 실시되었다고 한다.
- 3) 刘国福, 完善 <外國人在中国永久居留審批管理辦法>: 从评估外国人才才能切入, 2013년 11월 북경이공대학 좌담회 발표문 1項.
- 4) 刘国福/杜泽君, 2012年 <外国人在中国永久居留享有相关待遇的办法>评析, 刘国福/刘宗坤(主編), 出入境管理法国际移民, 北京, 法律出版社 2013.
- 5) 刘国福, 外國人在中国永久居留(中国绿卡)制度评判, 上海公安高等專科學校學報 2007.12,

특히 그린카드제도의 입법적 사고의 바탕은 “중국이 현재 발전도상국으로서 선진국과의 격차가 상당히 큰 관계로 중국의 발전을 위한 보다 정비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에 있다”<sup>6)</sup>고 하면서 만약 중국이 영구거류제도(그린카드)를 정비하지 아니 하면 장차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해외우수인재와 해외 투자를 끌어들이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또한 중국 국민(공민)과 영구거류 외국인간의 유대 및 중국에 대한 우호 및 귀속감을 강화시킬 필요도 있으며, 난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해 중국의 굴기하는 힘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영구거류제도(그린카드)를 법제화하게 하는 중요한 사상적 바탕이라고 하고 있다.<sup>7)</sup>

## 2. 영주권 취득 절차 및 주요 내용

### 1) 주관 기관

영구거류를 원하는 외국인은 시급 인민정부의 공안기관, 직할시 공안분국, 현국에 영구거류허가 신청을 한다. 이러한 신청을 받으면 각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과 국이 신청을 심사한다. 최종 심판결정권은 공안부이다.(법 제5조)

### 2) 영구거류 신청 자격(제6조, 제7조)

#### (1) 영구거류자격 일반

중국이 이른바 그린카드를 통해 영구거류를 허용하는 외국인은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기술이민 유형(제6조 제2호)로서 일정한 기술적 수준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공인된 기관에서 일정 직급

---

第17卷 第6期, 第1項.

6) 刘国福, 위의 논문, 上海公安高等专科学校学报 2007.12, 第17卷 第6期, 第2項.

7) 刘国福, 위의 논문, 上海公安高等专科学校学报 2007.12, 第17卷 第6期, 第2項.

이상으로 4년 이상 체류한 경우이다. 두 번째 유형은 투자이민(제6조 제1항)으로 일정한 금액을 중국에 직접투자하려는 외국인에게 인정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중국의 지역과 특성에 따라 투자액에 차등을 두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친족이민(제6조 제5,6,7 항) 중국인의 외국인 배우자와 미혼인 미성년(18세 미만)인 자녀, 영구거류외국인의 미성년 미혼 자녀와 60세 이사인 자로서 중국내에 부양할 수 있는 친족이 있는 경우 등이다. 이들의 경우 중국에 영구거류를 하고자 하는 모든 자는 중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신체가 건강하여야 하며, 범죄기록이 없는 자이어야만 한다.

## (2) 영구거류 자격

가. 중국에 직접 투자를 하고 있는 자로서 연속으로 3년간 투자가 안정적이고 납세실적이 양호한 자(제6조 제1호)이다. 이 경우 투자금액은 등록자본금으로서 투자 부문과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첫째, 중국정부가 발표한 <외국투자산업지도목록>에서 정한 권장산업류에 해당하는 부분의 경우는 미화 50만 불 이상이어야 하며, 둘째, 중국 서부지역과 빈곤지역으로서 국가가 중점 개발하는 지역의 현의 경우는 미화 50만불 이상, 셋째, 중국 중부지구의 경우는 투자 금액 미화 100만불 이상, 넷째, 중국에 대한 투자금액 200만 불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제7조 각 호).

나. 중국 내에서 부총경리, 부청장 직무에 해당하는 직위 이상에 종사하거나 부교수, 부연구원 등 부 고급직위 이상이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고 있는 자로서 해당 직위를 계속해서 4년 이상 담당하고 중국 체류 4년 중 최소한 3년간의 납세실적이 양호한 자(제6조 제2호)이다. 이 경우에도 <영구거류관리법>은 이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첫째, 국무원 각 부분 또는 성급 인민정부에 소속된 기구에서 해당 직위에 있는 자. 둘째, 중점고등학

교에서 해당 직위에 있는 자. 셋째, 국가의 중요사업 혹은 중대한 과학연구 항목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사업단위에서 해당 직위에 복무하고 있는 자. 넷째, 하이테크기술기업, 장려대상 유형의 외국무역투자기업, 외국무역투자선진기술기업 혹은 외국무역투자상품수출기업에서 해당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제8조 각 호).

다. 중국에 중요하고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국가가 특별히 필요로 하는 자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와 18세 미만인 미혼의 자녀

마. 중국 공민(국민)의 배우자 또는 중국에서 영구거류자격을 획득한 외국인의 배우자. 이 경우 혼인관계가 5년 이상 지속된 상태에서 중국에 연속해서 5년 이상 거주하는 가운데 매년 최소한 9개월 이상 중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안정적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바.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부모에 따른다.

사. 국외에 지계 친족이 없는 경우는 국내의 직계 친족에 따르며, 또한 만 60세의 경우는 연속해서 5년 이상 거주하는 가운데 매년 최소한 9개월 이상 중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안정적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 3) 신청절차

위에서 언급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영구거류자격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서 장한 서류 및 기록, 제10조에서 정한 내용의 각종 증명서 및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제6조 제1항의 경우에는 해당 정부부문에서 발급한 관련 증명도 첨부한다(제12조). 배우자 및 18세 미만의 미혼 자녀의 경우도 가족관계 및 출생 증명을 해당 국가의 영사관의 인증을 받아서 제출하며(제14조), 중국 공민(국민)의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의 경우에도 법이 정하는 소정의 증명을 신청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제9조 이하 제16조).

영구거류자격 신청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본인, 18세 미만인 미혼인 자녀는 부모 혹은 위탁인을 통하여 주요 투자지역(법 제7조 각 호) 또는 장기거류를 하고 있는 곳에 설치된 시급인민정부의 공안기관 혹은 직할시 공안 분국, 현국에 신청한다(제17조). 신청을 접수한 공안기관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18조). 공안부가 신청 외국인의 영구거류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이 중국내에 거류하고 있으면 <외국인영구거류증>을 발급하고, 해당 외국인이 외국에 거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영구거류신분확인표>를 발급한다. <외국인영구거류신분확인표>를 발급받은 외국인이 중국 영사기관을 방문하면 영사관리는 “D”자의 사증을 부여하고, 해당 외국인은 중국에 입국한 뒤 30일 이내에 공안기관에서 <외국인영구거류증> 수령한다(제19조).

#### 4) 영구거류기간

영구거류를 허가 받은 외국인은 5년(18세 미만) 또는 10년(18세 이상)의 유효기간을 가지는 <외국인 영구거류증명>을 발급받는데(제21조), 외국인은 이 증명을 본인의 신분 증 또는 신분증으로 대용할 수 있다(제3조). 영구거류자격을 획득한 외국인은 중국에 기간의 제한 없이 본인이 원하는 기간 동안 거류할 수 있다(제2조).

일단 영구거류를 허가 받아 영구거류를 허가 받으면 해당 외국인은 1년간 누적 체류기간이 최소한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한다. 만약 실제 체류기간이 매년 최소 3개월 이상에 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기거류를 하는 관할 성, 자치구, 직할시 공안청이나 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총 5년간 누적하여 최소한 1년 이상은 중국에 거류하여야 한다(제20조).

### 3. 영주권 취득 현황

2004년 ‘영구거류관리법’이 제정된 후 이 법률에 따라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의 수는 매우 적다. 2004년부터 2011년 사이 년 평균 248명의 외국인과 그 가족들이 영주권을 취득하였을 뿐이다. 예를 들면 2005년 9월 30일 현재 260,000의 외국인이 중국에서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체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1,835명이 영구거류 신청을 하여 심리중이며, 649명만이 영구거류허가증을 획득하였다고 한다.<sup>8)</sup> 다른 통계를 보면 2011년 말 현재 <외국인영구거류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총 4,752명이며 그 가운데 외국인 고급인력과 그 가족이 1,735명이라고 한다. 2011년 중국 총인구가 13억 7천만 명이므로 외국인 영구거류자의 수를 비율로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다.

## Ⅲ. 시사점

### 1) 제한적 제도 운영 - 특정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인정

중국의 이주 법제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대한 엄격한 관리<sup>9)</sup>, 엄격한 국적부여 조건을 설정하고 있다. 영주제도의 경우도 전체적인 중국정부의 이주에 대한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아니 하다. 그에 따라 중국의 영주제도는 외국 우수인재, 전문인력 그리고 투자 외국인에게 한정적으로 인정하는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중국은 영구거류제도를 <그린카드>라고 하는 틀에서만 접근하고 이해하고 있다. <그린카드>제도는 미국,

8) 胡蓓蓓/宋琳琳, 彭程, 郁明, 程启博, 我國“綠卡制度”完善研究, 辽宁警專學報, 第85期, 2014. 5(第3期), 第41項.

9) 자세한 내용은 中國人民共和國公民出境入境管理法(中華人民共和國主席令, 2012년 6월 30일, 제11기 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 第27次會議 通知)의 관련 규정 참조.



독일 등의 국가에서 영주권이라는 특혜를 대가로 하여 특정 고급·최첨단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력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실시하였던 제도이다. 따라서 해당 법에 따르면 특정한 기술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는 독자적으로 중국으로 이주하여 영구거류를 하고자 하여도 처음부터 영구거류신청 조차 할 수 없는 매우 폐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sup>10)</sup>

이주민을 받아들여서 장래에 자국민과의 통합을 통한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기 보다는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제한적으로 보충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러한 제도를 중국이 영구거류의 기본 틀로 하여 영주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의 영주제도는 해당 외국인력의 충원이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언제든지 영구거류제도를 대폭 축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중국은 세계 최대인구를 가지면서 56개의 민족으로 구성되는 다민족 국가이다. 국내적으로 인구과잉 문제에 직면해 있어서 외국인의 중국유입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더욱이 중국은 동부 해안지역과 중서부지역간의 생활수준 등의 차이로 인하여 국내 이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어서 외국인의 유입을 통한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을 논하는 것은 다소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2) 법·제도 자체가 가지는 문제점

### (1) 입법목적의 한계

중국의 <영구거류관리법>은 해당 법률에 입법목적은 직접 밝히지 않고 있어서 각 조항의 취지를 통해서 해당 법의 입법목적은 살펴 볼 수 있을 뿐이다. 즉, <영구거류관리법>은 제6조에 해당하는 특정 자격

---

10) 같은 의견, 刘国福, 完善 <外国人在中国永久居留审批管理办法>: 从评估外国人才才能切入, 2013년 11월 北京理工大学 座谈会, 第2-3项.

과 능력을 갖춘 외국인의 유치와 중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해당 외국인에게 영구거류자격을 부여하여 그들로 하여금 중국의 산업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입법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영구거류관리법>에 의해서 영구거류자격을 획득한 외국인 또는 화인(화교)과 중국 원주민과의 공존의 모색 등은 명목상의 목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sup>11)</sup> 결국 <영구거류관리법>은 중국의 일시적 수요에 따라 사실상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2) 영구거류신청절차의 복잡

<영구거류관리법>은 법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외국인이 영구거류 자격을 얻고자 신청하면 이를 신속하게 처리하여(6개월 이내) 당사자에게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구거류자격을 획득한 외국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무기한 체류할 수 있으며, 중국 내의 무체류기간도 상대적으로 길지 않다(매년 누적 체류기간 최소한 3개월 이상, 특별한 경우 5년 동안 누적 체류기간 1년 이상). 또한 2012년 9월 발령된 <外国人在中国永久居留享有相关待遇的办法>은 영구거류자격을 획득한 외국인에 대한 정치적 권리를 제외한 거의 모든 경제·사회·생활전반에 걸친 권리를 향유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이를 각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국가기관에게 통지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sup>12)</sup>

이처럼 중국의 <영구거류관리법>과 관련 법규는 영구거류자 유치 및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으나 운영 실제에서는 신청절차 및 신

11) <영구거류관리법>이 제정되고 시행된 이후 영구거류자격을 획득한 외국인의 수는 매우 미미하여 원주민과의 갈등 또는 통합을 모색하여야 할 정책적 필요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12) 外国人在中国永久居留享有相关待遇的办法 각종 조문 참조.

청과정에서의 관료주의적 행정 처리로 인하여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첨단, 전문 기술을 가진 채 중국 내에서 특정 직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이 영구거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구비하여야 하는 실제적 조건(계속 거류기간, 계속 근무기간 등)과 제출하여야 하는 각종 서류의 준비 등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그 수도 매우 많아서 신청자 본인은 물론 해당 외국인이 재직하고 있는 직장에서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sup>13)</sup> 예를 들면 특정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이 영구거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은 <영구거류관리법>이 정한 조건의 직장에서 해당 직무를 계속 가진 채 신청일 전에 이미 연속해서 4년 이상 해당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에서 해당 기간 동안 특정 직장에서 특정 직위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생활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sup>14)</sup>

이러한 어려운 조건을 갖추어도 해당 외국인은 법이 정한 <건강증명서>, <완세증명서>, <생활보장증명>, 미성년 미혼 자녀의 경우 <출생증명> 또는 <친자관계증명> 등 많은 서류를 원본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물론 각 증명 마다 요구하는 조건 등이 각각 별도로 있어서 해당 내용을 소명하는 것이 매우 복잡하고 어렵다.

### (3) 심사기준 불충분

해당 법과 시행규정은 신청 외국인과 해당 외국인이 속한 직장에게 거주·재직 기간, 직위 등의 요건과 각종 서류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정작 이러한 신청을 접수 받아서 영구거류자격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심사기준은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sup>15)</sup> 결국, 심사기관과 심사담당자가 해당 신청에 대한 자의적 판단과 결

13) 자세한 내용은 外国人在中国永久居留审批管理办法 实施规定 참조.

14) 같은 의견, 刘国福, 위의 발표문, 北京理工大学 座谈会, 第1-2项.

15) 같은 의견, 刘国福, 위의 발표문, 北京理工大学 座谈会, 第2项.

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신청인 및 신청인의 소속 직장의 경우 행정관청의 결정을 일방적으로 기다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수범자 비 친화적인 법과 제도라고 평가 할 수 있다.

#### (4) 법규 및 법조문의 불명확

2004년의 <外国人在中国永久居留审批管理办法>은 여러 조문에 걸쳐 모호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직접”, “온정”, “양호”, “중점”, “고신”, “중대”, “돌출”, “특별”, “주요”, “실제” 등을 들 수 있고 또한 “합법적 신분증”에서의 “합법”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납세 실적이 “양호”할 것에서 “양호”의 의미와 정도 등 법규와 조문이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모호하여<sup>16)</sup> 수범자인 외국인은 물론 영구거류신청을 접수받고 심사하는 법 집행자에게도 적용과 집행에서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 IV. 나가는 말

영주제도를 한 국가의 특정한 수요(고급인력, 전문인력, 투자 등)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여러 조건들이 해당 외국인력을 유인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예를 든다면, 영주자의 자유로운 경제 및 직업 활동이 보장되는지, 해당 국가의 생활환경이 영주외국인에게 적합한 지(외국인에 대한 원주민의 인식) 등, 해당 영주외국인이 필요한 때에 자국과 교류가 용이한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해당 영주외국인이 국적취득을 하려 하는 경우 국적 취득 조건(복수국적 인정)이 용이한지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16) 刘国福, 外国人在中国永久居留(中国绿卡)制度评判, 上海公安高等专科学校学报 2007.12, 第17卷 第6期, 第68项.

중국과 같은 비 이민국가의 경우는 외국인의 자국유입의 유연성 보다는 관리를 중요시 하게 된다. 그에 따라 국적취득이 어려운 것은 물론 시민권과는 관련이 없는 영구거류의 경우에도 상당부분 통제를 하게 된다. 중국의 그린카드(영주제도)가 제한적인 범위에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자에게만 인정하고 이들의 중국 국적취득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이유는 결국 중국은 인구감소 및 경제수축 등을 우려하지 않고, 오히려 인구과잉을 여전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중국의 영주제도는 한국의 경우와는 인식의 출발점이 다르므로 운영과 시행 목표도 다를 수밖에 없다.

한국의 경우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장래 한국사회의 지속발전이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다. 그에 따라 외국인의 적극적 이주와 유입이 한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한 대안이라는 입장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한국은 중국과 같은 나라와는 달리 외국인의 한국 이주와 정착을 적극 권장하고 이미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제도적 장치와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중국과는 달리 저출산·고령화로 오히려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의 경우에는 영주제도가 해당 영주외국인의 한국사회로의 적극적인 통합(국적취득과 같은 규범적 측면은 물론 사회공동체 속으로 통합되는)을 목표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17)

---

17) 통합의 의미가 과거처럼 혈통과 민족, 전통문화를 우선시 하고 외국인으로 하여금 이를 모두 인정하게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 외국인을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수용하는 동화주의적 입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통합의 실질적 의미와 내용에 대한 논의는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만 한다.

## 참고 문헌

- 刘国福, 简论外國人在中国永久居留(中国禄卡)制度, 河北法學 第26卷 第3期, 2008. 3.
- 刘国福, 完善 <外国人在中国永久居留审批管理办法>: 从评估外国人才 才能切入, 2013년 11월 北京理工大學 座谈会.
- 刘国福, 外國人在中国永久居留(中国禄卡)制度评判, 上海公安高等专科 學校學報 2007.12, 第17卷 第6期.
- 刘国福/杜泽君, 2012年 <外国人在中国永久居留享有相关待遇的办法> 评析, 刘国福/刘宗坤(主編), 出入境管理法国际移民, 北京, 法律 出版社 2013.
- 人社部, 关于印发 [外国人在中国永久居留享有相关待遇的办法] 的通 知, 政策法规, 2012. 53号.
- 張鉄岩, 谈中国的“禄卡”制度, 辽宁警专學報 第55期, 2009.5 (第3期).
- 胡蓓蓓/宋琳琳, 彭程, 郁明, 程启博, 我國 “禄卡制度” 完善研究, 辽宁 警专學報, 第85期, 2014. 5(第3期).

## 법령

- 外国人在中国永久居留审批管理办法(國務院 2003年 12月 13日 批准, 公安部, 外交部 第74号令 2004年 8月 15日 發布)
- 中华人民共和国公民出境入境管理法(中华人民共和国主席令, 2012年 6 月 30日, 第11期 全国人民代表大会常務委员会 第27次 会议 通知).
- 外国人在中国永久居留享有相关待遇的办法, 人社部 发 2012年 9月 25日.

FM 24



## 토론문

이재형  
(국가인권위원회)

### 1. 윤성혜 교수님 발표문 관련

중국에는 주숙등기제도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입국신고서에 체류지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입국신고서의 체류지 기재는 단기 체류 외국인에 대한 체류관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번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 전세계 위기 속에 아프리카 A국 국민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져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9.11이후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는 테러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도 단기 체류외국인에 대한 최소한의 안보적 사유의 주거 파악은 필요합니다. 특히, 외국인은 한국인과 달리 연락이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체류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중국과 같은 주숙등기 제도 도입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주민등록의 의무가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주숙등기 시 숙박업자의 의무, 관광 가이드의 신고의무를 위주로 할 필요가 있고, 중국과 같이 외국인이 개인 주거지 거주 시에 직접 관공서에 방문하게 하기보다는, 인터넷, 무선통신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서로가 자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중에 최대 비율을 점하고 있는 국가인 점에서는 유사하나, 13억 인구의 중국은 2013년

출입국 심사 인원 4.54억명 중 불과 약 5250만명이 외국인이었지만, 5000만 인구의 한국은 2013년 출입국 인원 약 5490만명 중 외국인이 무려 약 2400만명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단기체류를 포함한 외국인의 체류관리가 중국의 그것보다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민법제를 분석할 때에는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분석도 중요하지만, 훈령이나 지침 등 실무에서 활용되는 하위 법제를 검토해야 그 실체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반납의무가 있지만, 중국의 경우 거류증 반납의무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거류증 소지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에 가족, 보호자, 대리인 등이 외국인 거류증 말소신청을 해야하는 것에서 미루어볼 때, 실무 또는 지침 수준에서는 외국인이 완전 출국할 경우에 거류증 반납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 지를 파악하는 것도 향후 연구에서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중국의 정부조직 구조가 양국의 외국인등록제도에 미치는 영향도 앞으로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경우 출입국관리업무를 중앙행정기관인 법무부 소속 외국인본부와 그 소속 기관에서 담당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서는公安部 소속 출입경관리국과 변경국에서 출입국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지방정부에서는 각급 지방정부 소속 공안국 등에서 담당하는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통일된 출입국관리가 가능하고 외국인등록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 2. 이기흠 서기관님 발표문 관련

한국에 귀화한 중국인이 한국국적을 상실하는 경우에 생기는 문제는 엄연히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한국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나 취득한 한국국적을 상실한 사실이 중국정부에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양국 국적법제의 비교 분석을 통해 중국 국적법제를 파악할 필요는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국적법제의 운용에 있어서 가족관계등록제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듯이, 중국의 국적제도를 이해할 때 더 고려할 법제는 없는지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중국이 1949년부터 1980년까지 성문의 국적법 없이 국적법을 해결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도 그러합니다.

또한, 중국의 정부조직상 중앙에 공안부가 있지만, 각 지방정부 소속 공안조직이 있고 각 지방에 따라 국적법 해석의 실례가 다양한 만큼, 그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동포가 많이 온 동북3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3. 장은정 연구원님 발표문 관련

한국 비자발급 권한은 법무부장관에게 있고, 그 권한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재외공관에서는 소속 외교관이 비자를 발급하고, 법무부 외국인본부에서 일부 국가 재외공관에 주재관을 파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의 출입국관리업무 중, 출입국심사 업무는 공안부 출입국관리국 직속 변방총참, 공안부 변방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의 출입경관리는 과거 만리장성이 건설되기 이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만리장성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으로의 입국보다는 중국에서의 출국이 관건이다.’라는 어느 중국 출입경관리공무원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과의 무비자 협정을 검토할 때에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자국 국민을 무비자로 보낼 의도가 있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현재 중국인의 무비

자 관광이 제주도에서만 시행 중인 이유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태국과 무비자협정을 맺어 시행 중이며, 태국에서 관광목적 무비자 입국 후 불법체류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공항만에서 태국인 무비자 관광객 중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자들에 대해 입국거부를 하는 경우가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국 간의 외교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고, 실제 태국에서는 태국 거주 한국교민의 체류관리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합니다. 무비자 도입으로 인한 불법체류자 급증 우려를 공항 입국심사의 엄격화로 대응하는 것은 위와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특히 한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더욱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4. **최윤철 교수님 발표문 관련**

한국의 경우 영주권이 과거에는 재한 화교에 대한 정책으로 주로 작용했으나, 현재는 결혼이민자, 거주목적자 등 다양한 형태의 이민자를 위한 제도로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 국적을 쉽게 부여했다가 어떤 사유로 상실하게 되면 무국적자를 양산하게 되는 문제가 있고, 국적의 남발적 부여는 사회통합상 문제가 있으므로, 국적으로 가는 단계적 개념에서의 영주권의 의미를 찾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일부 이민자의 경우 모국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영주자격을 선호하는 측면도 있어 보입니다.

중국의 경우 아직까지 인구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큰 현실에서, 우수 외국인재 영입 등의 차원에서 영주거류자격 제도를 시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국의 한자녀정책의 영향으로 향후 중국에서도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따른

영주거류 제도의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는 듯 합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의 대비책으로 영주제도를 검토하는 것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주권자는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적용에서 실질적으로 국민에 준하는 자격을 가지게 되고, 영주권자의 사회통합에 정부와 시민사회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 경제적, 사회적으로 우리나라의 국익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토론문

차 규 근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 1. 최윤철 교수님 발표문 관련

- 가. 중국에서도 영주자격을 얻으면 5년(18세 미만) 또는 10년(18세 이상)의 유효기간을 가지는 <외국인 영구거류증명>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한번 영주자격을 부여받으면 갱신이 필요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체류기간을 갱신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설명되어 있으나, 체류외국인 15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경우도 탄력적 영주제도를 도입하여, 외국인 유형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화교와 같이 2~3대째 국내에 체류하고 있고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의 경우는 한번 부여받으면 갱신이 필요없는 영주자격을, 그 외 외국인들은 국익이나 가족관계, 국내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5년, 10년, 20년마다 한번씩 그간의 체류 실태를 반영하여 체류기간 갱신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준영주자격의 도입이 되겠습니다.
- 나. 현재, 우리나라 영주자격은 한번 취득하기는 어렵지만 한번 취득한 다음에는 아무런 관리가 되지 않고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단계적인 탄력적 영주자격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의 체류상 편의는 좀 더 도모하

면서도 영구적인 영주자격을 얻기 위하여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그 중간단계에서 범법사실이 있으면 한단계 강등을 하는 등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외국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민의 관점에서도 새로운 구성원으로 편입되는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도 완화함으로써 사회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 현재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중국에서처럼 영주자격을 얻은 다음에 1년에 누적 체류기간이 일정기간 되어야 하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제도는 영주자격만 얻은 후 1년 내내 외국에 있어도 아무런 불이익을 줄 수가 없는데, 이는 영주자격의 상징성과 의미에 비춰볼 때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종종 영주자격이나 국적을 취득한 후 주로 외국에서 거주하는 사례도 보이는데,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그리 바람직해보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익이나 전체 체류기간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2. 이기흠 서기관님 발표문 관련

가.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국적제도가 영주자격과 연계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미국 등 외국의 사례처럼, 국적제도와 영주자격을 연계한 영주자격전치주의가 도입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행 국적제도는 체류자격의 연계없이 일정기간 주소만 가지고 있으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외국인의 체계적인 관리, 국적의 무게감과 상징성 등을 고려할 때 국적제도와 영주자격을 연계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단계적 영주자격제도를 도입하여 낮은 단계의 영주자격은 좀 더 취



득을 쉽게 함으로써 영주권전치주의 도입으로 인한 외국인의 체류상 불편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나.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국적취득 전에 한국인과 사이에 낳은 자녀의 국적문제와 관련하여 종래 많은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자녀가 특별귀화를 하려고 해도,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인 여권을 쉽게 제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주한중국영사관은 이미 엄마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중국국적상실신고까지 하여 호구부도 말소된 마당에 왜 아이를 다시 중국 공민으로 출생신고하여 호구부에 올리려고 하는냐, 결국 아이의 한국국적 취득후 다시 중국국적 상실처리를 할 것 아니냐면서 여권이나 여행증명서 발급 협조를 잘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국적을 취득한 엄마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아이의 중국여권을 만들어서 특별귀화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들은 많은 비용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과연 국익과 국민의 권익, 국민경제에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여행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 귀화접수가 이루어진 사례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나중에 국적을 취득한 다음에 외국국적포기증명서 제출이 어려워 결국에는 한국국적이 상실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당 외국인들이 순수 외국인이 아니라 외국국적동포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여권 등이 없더라도 부모의 국적취득 경위, 출입국내역, 출생증명서, 본국에의 출생신고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런 경우에는 접수 및 처리 후 국적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의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외국국적불행사서약 대상자로 인정을 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 위명으로 입국한 후 한국국적을 취득하여 오랫동안 국민으로 살다가 뒤늦게 한국국적이 취소가 된 사람의 경우, 본명으로 입국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주한중국영사관에서 자신의 여권이나 여행증명서 등을 발급받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적취득 후 몇 년 동안 국민으로서 자신의 이름으로 보험도 가입하여 보험료도 수백만원씩 납입한 사람의 경우 보험을 중도해지하면 많은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며, 그 외 그동안 벌여놓았던 여러 가지 경제적 활동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아직 국내에 들어오지 않은 외국인이 아니라, 어떤 경위로든 국내에 입국하여 인적, 물적 유대관계를 오랫동안 맺고 살아온 외국인의 경우는 인도주의적인 견지에서 그동안 형성된 인적, 물적 유대관계를 가급적 존중해 줄 필요가 있지는 않을까요? 특히, 외국국적동포일 경우에는 동포 포용차원에서 국내 체류기간, 국적취득후 경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무국적자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소한의 인간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 3. 장은정 연구원님 발표문 관련

가. 중국의 외국인숙박등기제도에 대하여 소개하셨는데, 우리나라도 체계적인 외국인관리를 위하여 외국인숙박등기제도의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유입되는 외국인, 관광객 등이 더 많아질수록 이러한 외국인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이해하여야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이 생기지 않을 것이며 불법체류자 감소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으므로, 외국인숙박등기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통계청 e-나라지표를 인용하시면서, 앞으로도 결혼이민자 증가, 외국국적동포 유입, 유학생 증가 등으로 국내 체류외국인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셨는데, 저는 다소 견해가 다릅니다. 결혼이민자는 2005년도 13%로 고점을 찍은 후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며, 최근에 국제결혼 비자심사 강화 등으로 인하여 종전보다 국제결혼 건수가 그리 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국적동포의 경우도 한국계 중국인들의 유입추세가 중국의 경제발전과 전체 동포규모에 비춰볼 때 종전과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관광객이나 젊은 유학생 등은 국가정책에 힘입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중국비자의 경우 불법체류의 문제가 연계되어 있으므로 비자완화 과정에서 이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불법체류가능자를 걸러내기 위한 입국심사과정을 더욱 강화하고 온라인 비자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입국심사과정에서 불법체류가능자를 걸러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며, 자칫 선량한 외국인의 입국이 거부될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단지 과거에 불법체류하는 등의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공식적인 입국금지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자를 받고 멀리서 입국한 외국인이 공항에서 입국목적 불분명으로 입국거부되는 것은 반한감정이 조성될 수 있으며, 최근의 태국에서의 비자런 사태처럼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외국 당국과 협조하여 범죄전력자나 수배자 등 사회안전에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외국인의 입국은 원천적으로 차단하되, 그렇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는 입국 자체에서 걸러내는 것 보다는 숙박등기제 도입, 체류관리시스템 개선 등을 통하여 입국한

한·중 출입국관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외국인이 불법체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출국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 끝.